

정책연구 2007-25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

2007.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폭력에 대하여 反폭력으로써 다양한 논의들이 오랜 기간 전개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은 물론 건강, 가정의 해체와 경제적 위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예방활동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수준에 맞는 예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기초 연구는 여전히 여성과 관련한 폭력이 있어 사후적인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여성권의 정책의 수준을 더 적극적이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한 차원 높이하고자 지역에서 시도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복지기관으로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 1366, ONE-STOP 센터 등 다양한 관계 기관들의 연계는 무엇보다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여성에 대하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을 바탕으로 양성평등한 제주특별자치도로 평화의 섬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꾸준히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 향 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기대효과	4
4. 연구의 한계	5
II. 反폭력 : 성폭력·가정폭력 이론적 개념과 네트워크 연계의 선행연구	7
1. 성폭력·가정폭력의 이론적 개념	7
a. 성폭력에 있어 이론적 개념	7
1) 성폭력의 개념	7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8
3) 성폭력의 후유증	20
b.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22
1) 가정폭력의 개념	22
2) 가정폭력에 있어 잘못된 통념	27
3) 가정폭력의 후유증	28
c. 여성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	30
d.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32
2. 성폭력·가정 폭력 실태	34
1) 성폭력 실태	34
2) 가정폭력 실태	43

3. 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 및 관계 기관	49
1) one-stop 지원체계 마련	50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및 현황	52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및 현황	55
4. 성폭력·가정 폭력 예방사업 현황	58
1)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실태	58
2)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58
3) 성·가정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점검	64
5.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 현황	67
III.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69
1. 미국의 사례	69
1) 미국의 실태	69
2) 미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71
2. 호주의 사례	82
1) 통합대응	84
2) Zig Zag's Sexual Assault Service	88
3) Northern CASA(Center Against Sexual Assault)	88
3. 일본의 사례	88
IV. 성폭력·가정폭력 관계기관 네트워크 실태 조사	93
1) 조사 개요	94
2) 성·가정폭력 연계 체계 실태 조사	94
3) 성·가정폭력 관계기관 간담회	109

V. 정책 제언	112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부문	112
1) 연령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113
2) 성폭력·가정폭력의 사전 예방교실인 인권 교실 운영	113
3)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기관의 교육 통합 운영	113
4) 행위자·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추진	113
5) 공교육 기관에 있어 지속적인 성·가정폭력 교육의 정규화	114
6) 지역 사례를 통한 성·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114
2.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부문	115
1) 유관기관의 연계 메뉴얼 개발	115
2) 다단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116
3) 연계기관 네트워크와 관련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 개최	116
부록 1	118
참고문헌	124

표 목 차

<표1> 성폭력특별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10
<표2> 형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15
<표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17
<표4> 성폭력의 후유증	21
<표5> 형법 조항에 따른 가정폭력	24
<표6> 아동복지법상의 가정폭력	27
<표7>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상의 가정폭력	27
<표8>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35
<표9> 성폭력사범 발생 및 처분결과	36
<표10> 성폭력사범 발생	36
<표11> 성폭력범죄의 검거와 기소율	37
<표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	38
<표13> 강간 발생과 검거	38
<표14> 성폭력 피해유형	40
<표15> 장애인 성폭력 피해유형	40
<표16> 성폭력 가해자 유형	41
<표17>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유형	41
<표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42
<표19>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42
<표20> 성폭력 피해자 연령	43
<표21> 가정폭력 유형	44
<표22> 가정폭력 피해상황	44
<표23> 가정폭력 신고자 분포	45
<표24> 가정폭력 발생원인	45
<표25> 가정폭력 폭행수단	45
<표26> 가정폭력 가해자의 전과 유무	46

<표27> 가정폭력피해자 연령	46
<표28>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	47
<표29>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48
<표30> 가정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	48
<표3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49
<표3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58
<표33> 최근 3년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 기관 활동	60
<표34-1> 2005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61
<표34-2> 2006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62
<표34-3> 2007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63
<표35> 모부자복지시설 현황	67
<표36>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68
<표37> 성·가정폭력상담소	68
<표38> 프로그램 등록비	82
<표39> 조사개요	94
<표40> 여성복지기관의 연계에 따른 효과성	97
<표41> 연계기관 실무자 인지 여부	99
<표42> 평균 연계 요청 건수	100
<표43> 기관별 요청 현황	101
<표44> 연계에 따른 타기관의 실무자의 협조 여부	102
<표45> 연계에 따른 내부기관의 실무자 협조 정도	102
<표46> 외부 서비스 기관과 연계 정도	103
<표47> 외부 서비스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	104
<표48> 성폭력 피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유	105
<표49> 성폭력 피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유	106
<표50> 외부 서비스 기관의 인지 정도	107
<표51> 타 기관 실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107
<표52> 타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제언	108
<표53> 폭력 예방프로그램의 단계별 고려 내용	112

그림 목 차

<그림 1> 생존자 말하기 대회 포스터	21
<그림 2> 강간 발생과 검거추이	39
<그림 3> 전년대비 강간 발생율	39
<그림 4> 2006년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구성비	47
<그림 5> 1366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제	51
<그림 6>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용	65
<그림 7> coaching boys into Man	71
<그림 8> 소년에서 남성으로 교육시키기	72
<그림 9> Connect 홈페이지	73
<그림10> Community Overcoming Relationship Abuse(CORA)의 홈페이지	74
<그림11>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안내문	75
<그림12> 폭력의 순환 안내문	76
<그림13> 안전을 위한 안내문	77
<그림14> 호주의 성폭력 발생비율	83
<그림15>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가정폭력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의 실천규범	85
<그림16> 일본의 여성폭력 지원 체계	90
<그림17> 전문영역의 연계 필요성	95
<그림18>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 여부	95
<그림19>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 향상력	96
<그림20> 연계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극복 여부	96
<그림21> 현실적으로 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용이 여부	98
<그림22> 연계기관 수	99
<그림23> 연계 네트워크	116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이다. 특히 UN은 1985년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에서 여성폭력문제를 젊은 여성과 학대받는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각 국가에게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명백한 여성차별임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유형이 국제문서로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주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족 내 발생하는 폭력은 아내 구타, 여자아동에 대한 성학대,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결혼 내 강간, 여성음핵 절단과 여성에게 위대한 전통적인 관습과 관련된 폭력 등을 들었다. 그다음으로 일반사회에서의 폭력은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학대, 성희롱 및 위협,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 등을 포함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폭력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한 여성 폭력은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든지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성적·정신적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성에 근거한 폭력에 있어 여성폭력의 범주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통합조치 마련,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의 인신매매 근절 및 매매춘과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설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문, 특히 기업과 고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습관으로 여성과 관련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하여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 출산과 육아 가사를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로 한정지움에 따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주요 쟁점이나 개혁과제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은 남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에서 발생하는 일로 간주되어 사회문제로 접근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기점으로 여성의 저임금, 성폭력, 아내구타, 모성보호와 공공육아, 매매춘 등의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1987), “영유아보육법”(1990),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등 남녀평등보장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들의 매매춘,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간주하면서 여성주의적 상담과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1990대에 와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입법을 위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삼기보다 남성의 성적 일탈과 외도, 가정폭력 등을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 관점을 적용하고,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영역 역시 대부분남성으로 구성된 체제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짐에 따라 성·가정 폭력은 사회의 쟁점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과제로 지루하게 운동만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1953년 형법에 있어 ‘강간’의 규정은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항거불가능의 폭행과 협박과 함께 가해자의 배우자나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가 불가능했으며, 성적인 폭력에 있어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제한은 물론 여성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당한 자 또는 그렇게 되도록 행동이 방정하지 못한 자¹⁾로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1) 사례로 잘 알려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영화 소재의 실화가 있다. 1988년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려는 치한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하여 오히려 검찰, 재판부, 상대방 변호사의 성적·인격적 모독으로 여성에게 상해죄를 적용시켜 유죄판결이 났다. 그러나 한 여성 변호사의 항소 권유와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의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이 영화는 우리나라 페미니즘 영화를 탄생시킨

결국 여성들은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로서 결혼을 못하거나 이혼을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없었으며, 가정폭력 역시 남의 가정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금기 의식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이는 아내나 자녀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는 남성주의적 의식의 강화로 법적 보호 측면에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9년 1월 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으로써 세계적으로 드문 입법의 선례와 함께 우리나라 형사법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범죄가 더욱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故양지승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2007.3),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사건”(2007.8)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있어 일상생활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성을 벗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성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만이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예방의 강조가 있음에도 여전히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회성의 특강 등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사업의 추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접목시킬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외국에 있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조사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 지역에 적합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례로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의 연계방안 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성감수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가운데 3개 기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7개 기관(2개 기관은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1개 기관, 가정폭력상담소 3개 기관, 여성긴급전화 1개 기관 등)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기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의 여성관련 폭력으로 성폭력·가정폭력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관점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후중심의 활동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점검하는데 있다.

실제로 폭력에 있어 폭력의 심각성, 후유증,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 등의 복

지 대책,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의 심각성이 문제의식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거나 여전히 재범의 발생과 사건의 흉폭성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이러한 사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난(至難)한 영역으로 급변하지 않지만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방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지역수준의 성·가정 폭력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울러 기존의 여성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과 달리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성운동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매우 중요하나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영역에 있어 연대를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폭력·가정폭력의 대상을 일반화함으로써 지역·연령 등 다양한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정 연령의 한정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을 논의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은 물론·결혼 이민자에 대한 폭력·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의 원인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접근에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은 프로그램 수강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즉 일반인, 잠재적 피해자와 행위자, 피해여성 및 가해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 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의는 세분화 보다는 잠재적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결국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예방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노력

을 위한 출발점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여성폭력은 물론 성과 아동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한 추가 논의의 진행과 함께 여성폭력 관련 기관의 연대와 反폭력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이 되고자 한다.

Ⅱ. 反폭력 : 성폭력 · 가정폭력 이론적 개념과 네트워크 연계의 선행연구

1. 성폭력 · 가정폭력의 이론적 개념

a. 성폭력에 있어 이론적 개념

1) 성폭력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1980년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성폭력을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을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여왔다. 실제로 정조에 대한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아닌,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로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이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면서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여자로써 숨겨야할 부끄러운 일’, ‘드센 여자의 팔자’에서 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몇가지 법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적어도 5개의 법률안에서 성폭력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제8059호)」, 「형법(법률제7623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제863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제8169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법률제7653호)」, 「형사소송법(법률제8496호)」 등에 성폭력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함)상의 죄와 형법상의 죄, 그리고 이들 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 되는 죄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해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가운데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가운데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0월 개정된 사유 사회적 약자인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에 대한 신설로(법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법 제11조제3항 신설)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일부 처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셋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조정(법 제14조)을 통해 기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14조의2) 역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현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넷째, 성폭력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온 친고죄의 범위 축소(법 제15조)를 하였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

다섯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법 제21조제3항·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 신설)를 신설하였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향후 일반 국민

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의 도입(법 제21조의2 신설)을 통해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21조의3)를 통해 기존의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여덟째,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를 강화(법 제22조의3) 하였다. 현재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만을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왔으나, 향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 이를 다시 내용과 처벌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폭력특별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이외 신설조항)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벌
특수강도 강간죄 등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 제1항(야간주거침입강도), 제331조(특수 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 강간죄 등	제5조제2항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죄 등	제6조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죄 등	제6조제2항	제6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계속)

죄명	조항	내용	처벌
특수강간죄 등	제6조제3항	제6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제7조제1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친족범위 :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제7조제2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제7조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친족범위 :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등	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죄 등	제8조의2의 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죄 등	제8조의2의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죄 등	제8조의2의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속)

죄명	조항	내용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죄 등	제8조의2의 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죄 등	제8조의2의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등 상해·치상죄	제9조제1항	제5조(특수강도강간)제1항, 제6조(특수강간등)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상해·치상죄	제9조제2항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또는 제12조(미수범)(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치사죄	제10조1항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12조(미수범)(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등 살인·치사죄	제10조2항	제6조(특수강간등) 내지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12조(미수범)(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1조1항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속)

죄명	조항	내용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1조2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1조3항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는 행위	간음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죄	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14조2의 제1항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14조2의 제2항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은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가운데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5조(공연음란),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가운데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조항과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8장의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제22장은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풍속에 해당되며, 제31장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부녀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32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제38장의 강도강간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때 성립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의 형식에 의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형법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범죄와 함께 성풍속, 성도덕을 해치는 범죄까지도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켜 성폭력의 범주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전히 “부녀(婦女)²⁾”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 <표2>는 형법 조항에 규정되고 있는 범죄내용과 처벌규정이다.

2) 현재 형법은 성폭력과 관련 “부녀”로 한정함에 따라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가령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체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 역시 성립되지 않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사례를 통해 오히려 성폭력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남성 편향성을 강하게 유지함에 따라 성불평등성이 발생하고 성차별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인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부녀” 조항을 “다른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표 2> 형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죄명	조항	내용	처벌
음행매개죄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 죄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 죄	제244조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 등	제288조 제1항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 등	제288조 제2항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행위(상습범, 미수범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미수범의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제292조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자(상습범,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의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강간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속)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별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 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미수 범 처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301조	제297조(강간죄) 내지 제300조(미수 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를 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301조의2	제297조(강간죄) 내지 제300조(미수 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하는 행 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 행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 금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 제2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 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제304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도강간죄	제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밖에 성폭력특별법 제2조2항은 형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와 성폭력특별법의 제5조 내지 제14조의 2의 죄 이외 앞서 서술된 형법상의 죄와 제22장에서 다른 법률(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169호)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범죄행위와 벌칙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법률명	조 항	내 용	처 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8169호)	제5조의2 제4항에서 제8항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1항과 제2항,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1항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처벌) ▫ 상습적으로 형법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1항과 제2항,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형법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1항과 제2항,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 형법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1항과 제2항,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8169호)	제5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다시 이들 죄를 범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계속)

법률명	조 항	내 용	처 별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제7653호)	제2조2항 내지3항과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 가운데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3조(상습범)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2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다만 제304조는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동법 10조의 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의 종료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성폭력특별법 (법률제8059호)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8조·제9조·제12조 제13조 규정 준용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제12조의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봄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우리사회에 있어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도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초기 개인의 원인에서 찾고 있으나 실제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되어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생물학적인 성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성역할로 여

성은 여성성,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교육받고 성장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성으로써 sex, gender, sexuality 역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안에서 존재하면서 규범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의 성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 등을 규제하여 왔다.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재생산되면서 남성과 다르게 훈육되어 온 여성의 몸과 생각, 행동은 남성이 여성을 보호/통제하는 기반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상호비대칭적인 성별 관계의 모순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남성에게 있어 ‘성’은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남성은 쉽게 성적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여성에게 있어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과 접근은 남성 중심으로 향유됨에 따라 남성들로부터 일어나는 성적 농담과 포르노, 성매매 등은 남성이 향유하는 성문화로써 유희와 쾌락을 제공하고 진정한 남성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갖게 하여왔다.

이러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남성중심 성문화에서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확산은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옷차림과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남성의 성적 실천 방식을 문제 삼기보다 성폭력 발생에 따르는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몸의 위험과 취약함을 여성이 수용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이런 사회문화에서 여성은 성에 있어 수동적이고 무지하며,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선호되고 여성의 거부는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왜곡 되어 성폭력이 은폐되어지기 십상이었다. 실제 성폭력은 성관계의 하나의 방식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강간’과 ‘화간’으로 주장되는 사례³⁾들이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⁴⁾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남성들에게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연장자와 연소자, 상사와 부하직원, 비장애인과 장애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등의 관계에서

3)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성희롱에 있어서 남성들의 가부장제적인 문화로 종종 변화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례로 등장하기도 한다.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이 폭력이 아닌 친밀함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성폭력의 통계에서 통상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였으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성폭력을 행하는가’를 살펴보면 권력의 작동 방향과 성폭력의 상관관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남성 간에 성문제 역시 위계를 동반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볼 때, 권력 관계가 성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 ⇒ 일상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발생 ⇒ 아는 사람 74%, 가족 13%

셋,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 ⇒ 아는 사람이 74% 결국 일상적 은폐

넷,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 성감수성과 성에 대한 존중 필요

다섯,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 ⇒ 생명의 위협, 여성에게 정조 강요

여섯,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 아니다 ⇒ 시선 역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요소

일곱,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 위협에 의한 침묵도 동의라고 볼 수 있는가?

여덟,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가 아닌가? ⇒ 늦은 시간 술 먹는 남자는 모두 범죄자

아홉, 단 한 번 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 신고율 6.1%로 초범 규정 모호

열,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다 ⇒ 피해자 중심의 접근 필요 가해자의 의도는 상관 없음

열하나,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행을 유발 ⇒ 여성에게 책임 전가

열둘,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 자신보다 약자에게 성적 표출 특히 여성, 아동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재구성)

3)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에 있어 성폭력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victim)”로 표현하여 왔으나, 이 용어는 무력감과 치욕스러움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생존자(survivor)”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생존자라는 용어를 통해 강간당한 사람의 용기와 결정권을 반영하고, 신체적인 생존과 함께 심리적인 회복까지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폭행의 생존자들은 생존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서적·행동적 고통의 경험으로 이에 대한 후유증은 다음 <표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4> 성폭력의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	행동적 후유증
두려움, 치욕감, 당황함, 걱정, 공포, 혼란, 정신적 충격, 분노, 우울 보복감, 증오, 자존감 훼손 자기비난(이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경우) 성폭행에 대한 기억의 잔영 무감각, 남성불신, 배신감(부부간) 성폭행 재발에 대한 두려움 후 외상성 장애	다양한 신체적 상해 두통, 메스꺼움, 소화기장애 수면장애, 악몽. 성병감염, 임신	성행위에 대한 회피 성적문제의 야기 성폭행을 상기시키는 남성회피 거주지와 전화번호 변경 자살행동 약물중독

출처 : 조홍식외. 2004. 여성복지학

생존자라는 용어가 현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말하기대회”가 2003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림 1> 생존자 말하기 대회 포스터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b.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⁵⁾은 아내 학대, 아내 구타, 가족 폭력, 배우자 학대 등 다양한 용어로 병용되어 왔다. Gender이슈화 되면서 ‘학대’, ‘여성학대’, ‘구타’ 등의 용어가 선호되었으며, ‘파트너 학대(partner abuse)’,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친밀한 관계 폭력(intimate violence)’, ‘관계 폭력(relationship violence)’ 등이 사용되어 왔다.

법에 있어 가정폭력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2007년 개정 법률 제8580호)」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2007년 개정 법률 제8367호)」와 함께 형법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은 형법 제2편의 29가지로 규정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아동복지법」 위반 1가지와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21가지 죄를 규정하는 수준이다.

우선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

5)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의 유형으로 스트라우스는 8단계로 구분하였다. K(물건을 던지는 행위), L(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M(뺨을 때리는 행위), I(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O(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위협하는 행위), P(계속 무차별로 때리는 행위), Q(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R(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을 실제 사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을 학대행위의 행태와 학대대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유형>

행태 대상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	정서적 폭행	기본욕구의 충족실패
아동	벌주는 폭행 신체 학대	아동 성학대	아동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아동 방임
배우자/ 가족동반자	아내 구타	배우자 강간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노인	노인 신체적 학대	노인 성학대	노인 심리적 폭행 학대	노인 방임

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제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로 남성인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와 가정 해체를 막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을 가장 최소화시켜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가족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 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수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와 함께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과 관련 죄목과 제366조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가중처벌 되는 죄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에 있어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

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결국 법률에서 보는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은 폭행, 감금, 상해, 유기, 협박, 체포, 학대, 혹사, 공갈과 같이 폭력적인 행위는 물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까지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5> 형법 조항에 따른 가정폭력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벌
상해, 존속상해죄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상해, 존속상해죄	제25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제258조 제1항 제2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나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제258조 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나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폭행, 존속폭행죄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 존속폭행죄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특수폭행죄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계속)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별
유기, 존속유기죄	제271조 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존속유기죄	제271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유기죄	제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혹사죄	제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죄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죄	제276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제277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제27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체포, 특수감금죄	제27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속)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별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신체 수색죄	제321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등 죄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아동복지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법률제7891호)」에서 가정폭력은 <표 6>과 <표 7>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아동복지법상의 가정폭력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별
금지행위죄	제29조 제8항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7>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상의 가정폭력

죄 명	조 항	내 용	처 별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행한 자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3항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을 위반하거나 폭행 등의 형법 각조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가정폭력에 있어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통념으로 알려진 잘못된 통념은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이유없이 폭력을 일삼으면서 가해자의 합리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 역시 가해자의 트집으로 귀결되고 있다.

다음으로 ‘내 마누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통념이다. 이는 아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이다.

가정폭력에 있어 ‘가해자는 모두 정신병자나 알코올중독자’라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에 있어 가해자로 지목받는 알코올중독과 정신병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리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며, 배우자에 대한 의처증·의부증이 폭력의 원인으로 되기도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은 대부분 저소득가정이다’로 이는 전체적으로 폭력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사례는 빈부·학력 등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고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통념 역시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의 공포와 폭력으로 인한 좌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행동양식은 반복된 구타의 결과로 빚어지므로 이에 대한 상담 등의 치료를 통해 변화된 행동양식을 교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인데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통념은 남의 집안일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방치와 은폐에 가장 직결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서 공론화된 것이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에서부터 국민의 인식이 전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3) 가정폭력의 후유증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크게 피해자, 자녀, 사회적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폭력

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우울증 발병률이 4배나 높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를 나타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은 공포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신경과민 등으로 폭력의 지속으로 그 정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즉 지속적인 구타 상태에서 여성은 타인에게 자존감 상실 등의 이유로 구타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구타하는 남편을 오히려 두둔하는 등 폭력에 의한 심리적 노예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정신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살과 우울증, 정신착란, 무력감, 대인기피 등을 보이며 나아가 남편살해 등의 범죄⁶⁾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부간의 가정폭력은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쉽게 연결되고 있다. 어린 자녀에 대한 폭력은 물론 성적학대까지 딸에게 가해지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체적 발육 상태와 정서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야뇨증, 섭식장애, 판단력 장애, 사고력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 부적응, 적응 장애 등 포괄적인 인격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의 폭력 학습은 초기 일상화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성장한 후에 부모의 폭력의 인간관계 모델을 자연스럽게 학습함에 따라 잠재되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달리 직장이나 가정 등의 갈등관계에서 익숙해진 폭력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을 통해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며 이들은 다시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폭력의 재생산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가정에서의 폭력의 사회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은 폭력의 세대 간 전수⁷⁾와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세대 간 전수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같은 행동을 배운다’는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은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쉽

6) 보도된 뉴스 기사를 보면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 자녀에게 폭력과 더불어 방화 일어난 사고를 비롯하여 화기에 가스누출 등의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63008>

7) 세대 간 전수 이론(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ory)

게 모방(대리적 강화)하고, 반대로 벌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대리적 처벌)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폭력성이 자녀에게로 전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자녀는 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의 폭력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아동기에는 어머니의 무력함을 동정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소년기를 거치고 남자 아이는 아버지의 공격적인 모습을 혐오하면서 정작 본인의 가정 안에서 자신이 다시 아버지가 했던 말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거기서 오는 자괴감으로 자신의 학대는 물론 자녀학대, 알코올중독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고 자녀들은 다시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는 학대자로, 여아는 피학대자로 세대 간의 전이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대 간의 전이라는 이론을 반증하는 많은 연구들 역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세대 간의 전이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른 아동에 비하여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논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c. 여성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해당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중심의 역량강화와 여성폭력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와 피해자 중심의 치료 방법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연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의 경험, 가정폭력에 따른 범죄,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신고, 프로그램, 대응과정, 가해자 연구 등 다양한 부분을 주제로 연구⁸⁾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기관 여성종사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박미은, 한국가족사회2007),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 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이수정, 2006), 가정폭력에 대한 기혼여성의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이규은, 2006),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

8) 기술한 연구 제목은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논문 검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사용한 검색 키워드는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다.

분노 표현 방식 및 우울(차보경 외, 2006),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대응양식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구수경, 2006),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김인선 외,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장수미 외, 2005),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김지영 외, 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승연 외, 200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윤형관, 2004),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허경미 외, 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승연 외, 2004),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결혼과 결혼지속과정에 관한 생애 과정적 사례연구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 (정민자 외, 2002), 가정폭력 세대전이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경신 외, 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합행동과 소통윤리 :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단체의 사이버 대응사례를 중심으로(정숙경, 2002), 구타 남편에 대한 사례 연구(김인숙, 1998),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서경현, 2003), 한인 이민 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와 예측변인(이은주, 2004),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와 정신건강(김재엽 외, 2003), 대전·충청지역 여성들의 성장기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연복, 2001),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지지적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경험(김선아 외, 1999), 구타 남편에 대한 사례 연구 - 여성주의 사회사업 개입을 중심으로 - (김인숙,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김재엽, 1998), 여성복지서비스 공급분석(박영미, 2001)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가정폭력에서 다루지는 영역은 주로 세대 간의 학습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범죄 유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상담, 피해자를 대하고 있는 경찰 등 신고기간의 행태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폭력은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심영희, 1989),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기술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손승아, 1992),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정경자, 1993), 아동 성학대와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모색(윤혜미, 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한인섭, 1994),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영란, 1994), 성폭행 피해환자에 대한 사례연구(임문환, 1995), 서울지역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권일남 외 1997),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김성희, 1998), 그 밖에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서경현 외 2007),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서경현, 2003),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방향(김재엽 외 1998),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상담소의 서비스 연결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박영란 외 2000) 등이 있다.

성폭력은 여성 및 아동을 구분하여 연령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대와 함께 논의가 되거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과 관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여성인권 증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김창연, 2007), 여성폭력 긴급전화와 지역협의체의 연계에 관한 연구 - 서울 「여성 1366」을 중심으로 - (박명혜 외, 2006), 여성폭력 긴급의료 지원센터로 내원한 성폭력의 유형 분석(노세현 외, 2004), 정부와 민간가정폭력상담소의 협력관계가 민간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소정, 2005) 등이 있다.

연구 주제들은 대부분 여성폭력과 관련 치료적인 접근과 심리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도 등과 관련한 내용 역시 연구주제로 선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금까지 폭력실태조사에서와 폭력피해여성의 특성을 논의하는 연구 안에서 정책제언에 일부분 다루어졌다. 긴급연락체계(hotline) 구축, 정보제공, 의료·법·지역사회·학교,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자원간의 연결서비스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여성개발원(1992)⁹⁾은 이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초기개입, 중점지원, 사후관리 등의 3단계로 구분 정책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박미은(1996)은 가정

9) 한국여성개발원은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서비스를 연결, 조정하는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며 관련기관들의 협조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김인숙외(1998)도 관련서비스 주체들의 기능의 소개와 함께 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법적지원, 경찰,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비스체계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에 따라 한국여성의 전화연합(1998, 1999)은 상담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통해 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정폭력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기관 특히 경찰의 실제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찰내부에서도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경찰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 부족, 명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정보 제공,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¹⁰⁾이다(최선애, 2007).

서비스 연계의 개념 정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연계를 맺는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서비스 연계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홍보·교육과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그 서비스의 소재를 알려주고, 복지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 복지기관과의 협력 또는 공동협력을 하고, 복지대상자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연계유형에 대한 연구로 베일리는 서비스간의 연계를 “협력(協力)”으로 3단계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1단계는 특정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 2단계는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의 직원들 간의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는 형태, 3단계는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된다고 설명하였다.

10)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의 대처는 가장 먼저 개입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신고에 의한 출동, 폭력행위의 제지, 범죄수사, 임시조치의 신청,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24시간 운영되는 체제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과 구조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찰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와 태도에 의하여 피해여성들이 좌절감, 불신감, 혹은 용기 등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와 달리 경찰의 대응이나 태도에 따라 경찰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례가 줄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연계기관 구성에 있어 가장 많이 변화를 요구하는 대상이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관의 변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게 된다.

연계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연계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구조적인 요인, 실무자의 연계관련 교육, 정기모임, 관리자들의 태도, 기관 및 전문가간의 상호 이해, 개인적인 친분관계, 근무환경 및 인간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는 1990년 후반을 기점으로 대부분 중심된 논의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역에 있어 연계방안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기관 서비스 통합 제도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2. 성폭력·가정 폭력 실태

1)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실태

199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성폭력 신고율은 6.1%로 매우 낮았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실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관련 통계와 경찰청의 생활안전 관련 통계에서 일부분 제공되는 실정이다.¹¹⁾ 최근 제공된 성폭력 범죄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된 2005년 통계로 13,446건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은 1994년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형사적 개입이 이전보다 많아져 고소율이 1996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발생이 1994년에 7,405건에 비해 2005년 현재 13,44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여성관련 폭력에 대한 통계들이 신고건수와 발생건수가 큰 격차를 나타냄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표 8>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전국)

(단위 : 건)

연 도	계	형법(강간)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994	7,405	6,173	1,232	-
1995	6,093	4,844	1,249	-
1996	7,026	5,580	1,446	-
1997	7,067	5,627	1,440	-
1998	7,846	5,978	1,868	-
1999	8,565	6,359	2,206	-
2000	10,381	6,855	2,920	606
2001	12,062	6,751	2,750	2,561
2002	11,580	6,119	3,325	2,136
2003	12,494	6,531	3,886	2,077
2004	14,089	6,959	4,264	2,866
2005	13,446	7,321	4,282	1,843
2006	15,326	8,755	4,955	1,616

* 출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 재인용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율이 24.1로 2004년의 22.6명에 비해 1.5명, 1999년의 12.3명에 비해 6년 사이에 무려 11.8명이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53.3%에 달하던 기소율은 2005년에 들어 13.3%가 감소한 40.9%로 낮아졌다.

<표 9> 성폭력사범 발생 및 처분결과(전국)

(단위 : 건)

연도	접수 인원	처 리 건 수							미제
		계	기 소		불기소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건	%	건	공소권 없음			
1998	9,480	9,134	4,871	53.3	3,718	-	240	305	346
1999	10,096	9,818	4,934	50.3	4,317	-	256	311	278
2000	9,559	9,310	4,590	49.3	4,204	-	287	229	249
2001	8,379	8,389	4,005	47.7	3,913	2,338	268	203	239
2002	7,951	7,984	3,768	47.2	3,791	2,355	253	172	202
2003	8,521	8,471	3,935	46.5	4,048	2,553	303	185	242
2004	9,393	9,232	3,799	41.2	4,980	3,150	283	170	322
2005	9,280	9,294	3,805	40.9	4,951	3,112	332	206	317

출처 : 법무부 여성통계, 2006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나, 그에 반하여 사법기관의 성폭력 사건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진 실정이다. 불기소한 가장 큰 이유가 ‘공소권 없음’으로 2005년 불기소 4,951건 중 3,112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었는데 이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무려 33.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여전히 친고죄 조항으로 남아있으며, 고소기간 역시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발생에서 고소까지 기간이 큰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형법상의 성폭력 관련 조항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표 10> 성폭력사범 발생(제주)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178	172	175	171	230	212
검거건수	152	159	147	150	212	174
검거인원	150	169	154	172	219	181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의 성폭력 범죄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7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에 230건으로 전년대비 34.5%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은 전년에 비하여 7.8% 줄어든 212건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폭력범죄의 검거와 기소율(제주)

(단위 : %)

구 분	검 거 율		기 소 율	
	전체	성폭력	전체	성폭력
전 국	91.3	88.2	52.0	40.9
제 주	88.5	79.6	54.6	37.3

출처 :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에서 재구성

<표 11>은 지역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범죄의 검거율이 91.3%인데 반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88.2%에 그치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체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88.5%인데 반하여 더욱 낮은 79.6%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고소된 성폭력 범죄가 재판으로 가는 비율, 즉 기소율이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 기소율이 40.9%에 불과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은 37.3%로 매우 낮은 편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0년 7월 이후 년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 2007년 4월까지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은 인구 1만명 당 성범죄수가 3.36명으로 전국 평균 2.64명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인구 1만명 당 성범죄수와 12세 이하 아동인구 1만명 당 성폭력 범죄자수가 10.71로 전국 평균 6.89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발표되는 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를 통해 인구 1만명 당 성범죄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구분 지역	2000년 7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총수	범 죄 유 형					인구 1만명당 성범죄수	청소년 인구 1만명당 성범죄수	12세이하 아동인구 1만명당 성폭력 범죄자수
		강간	강제 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전 국	12,934	2,268	2,959	7,009	675	23	2.64	11.15	6.89
제주도	188	53	53	80	2	0	3.36	13.02	10.71

출처 : 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bb/bb04000.ssp

강간 발생율은 2001년을 6,751건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2003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면서 2004년 6,959건으로 2001년에 비하여 208건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강간사건 발생율은 61,634건으로 한해 평균 6,848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루에 285건 30분에 평균 1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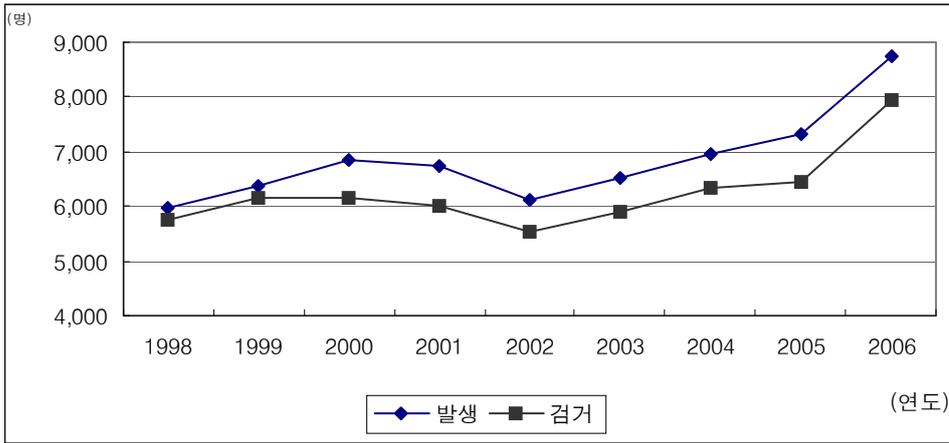
<표 13> 강간 발생과 검거

(단위 : 명, %)

연도 강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9	7,323	8,759
검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2	6,443	7,937
전년대비 증감율	-	+6.4	+7.8	-1.5	-9.4	+6.7	+6.6	+5.2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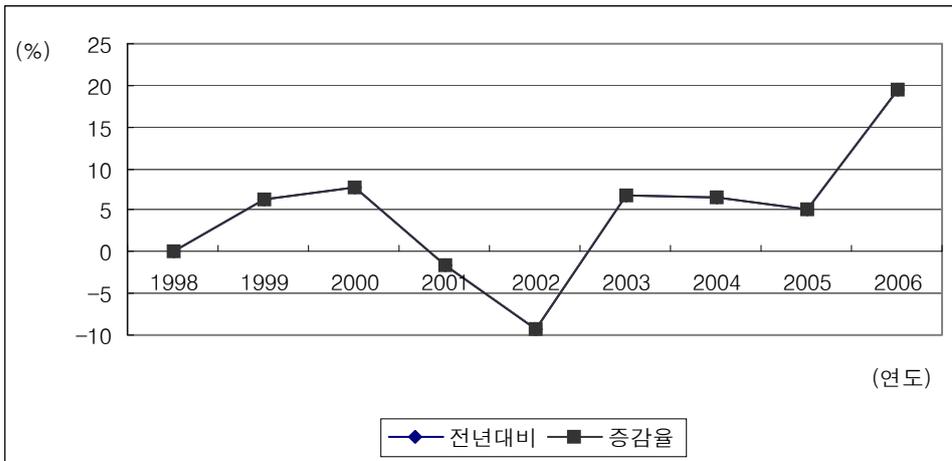
자료 : 범죄백서(2007)

<그림 2> 강간 발생과 검거추이



성폭력 가운데 강간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추행과 기타가 꾸준히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성폭력의 범주는 점차 더 높아지고 저연령화 됨에 따라 여성에게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 전년대비 강간 발생율(1999~2006)



성폭력의 피해 유형은 강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간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성추행과 기타(성희롱,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전화 등)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표 14> 성폭력 피해유형

(단위 : 건, %)

연도	계	강 간	성추행	기 타
2004	23,284	9,669	9,240	4,375
	100%	41.1	40.2	18.7
2005	24,911	12,615	10,220	4,406
	100%	46.3	37.5	16.2
2006	27,286	11,588	10,714	4,984
	100%	42.5	39.3	18.2

자료 : 여성폭력시설

* 기타내역 :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

장애인 성폭력 역시 강간의 비율이 증가와 감소의 추세가 변동이 있으나 감소의 추세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반면 성추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권 측면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존중의식의 확산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15> 장애인 성폭력피해유형

(단위 : 건, %)

구분	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2004년	937	466	239	137	95
	100%	49.8	25.5	14.6	10.1
2005년	767	489	195	75	8
	100%	63.8	25.4	9.8	1.0
2006년	816	480	248	78	10
	100%	58.8	30.4	9.6	1.2

자료 : 여성폭력시설

성폭력의 가해자 유형은 기타 유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애인·동급생·

선후배, 모르는 사람, 친족·친척·배우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3%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함에 따라 성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16>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

연도	계	친족 친인척 배우자	애인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 사람	기타
2004	23,284	3,872	2,572	2,491	784	3,063	4,251	6,251
	100%	16.6	11.0	10.3	3.4	13.3	18.2	27.2
2005	25,395	4,686	4,219	2,519	610	3,355	4,272	5,734
	100%	18.5	16.6	9.9	2.4	13.2	16.8	22.6
2006	27,978	4,515	5,607	2,654	966	3,883	4,621	5,732
	100%	16.1	20.1	9.5	3.4	13.9	16.5	20.5

* '05년 이후 :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 모두 표기
 기타내역 : 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채팅상대자, 미파악 등
 자료 : 여성폭력시설

장애인의 성폭력 가해자 유형은 이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

연도	계	친족 친인척 배우자	애인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 사람	기타
2004	937	171	101	193	11	77	165	219
	100%	18.2	10.7	20.5	1.2	8.2	17.6	23.6
2005	767	136	115	190	14	35	150	127
	100%	17.7	15.0	24.8	1.8	4.5	19.6	16.6
2006	836	127	121	210	28	50	163	137
	100%	15.2	14.5	25.1	3.3	6.0	19.5	16.4

자료 : 여성폭력시설

장애인의 경우 64.1%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함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무엇보다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약자에 대한 인권차원의 배려가 무엇보다 학습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내용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법적지원, 기타, 의료 지원, 시설입소 연계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수사·법적지원	기타
2004	44,169	24,922	5,370	639	10,386	2,852
	100%	57.1	12.5	0.7	23.2	6.5
2005	50,219	27,298	5,262	661	10,536	6,462
	100%	54.3	10.5	1.3	21.0	12.9
2006	57,207	32,226	5,062	660	12,794	6,465
	100%	56.3	8.8	1.2	22.4	11.3

*'04년 이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를,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포함함

<표 19>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수사·법적지원	기타
2004	5,425	2,845	522	283	1,379	396
	100%	52.4	9.6	5.2	25.4	7.4
2005	6,517	3,119	363	337	1,283	1,415
	100%	47.8	5.6	5.2	19.7	21.7
2006	6,999	3,540	400	251	1,489	1,319
	100%	50.6	5.7	3.6	21.3	18.8

성폭력 피해자 연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0대 이상이 평균 6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0~6세의 유아의 경우 전체 9%를 차지함에 따라 저연령층에 대한 성폭력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저연령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중벌부과 등의 논의가 더욱 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0> 성폭력 피해자 연령

(단위 : 건, %)

연도		유아 (0~6세)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2002	전체	48,112 (100.0)	1,511 (3.1)	4,087 (8.5)	11,635 (24.2)	30,879 (64.2)	-
	장애인	4,942 (100.0)	49 (1.0)	310 (6.3)	915 (18.5)	3,668 (74.2)	-
2003	전체	51,431 (100.0)	2,201 (4.3)	4,781 (9.3)	10,742 (20.9)	32,877 (63.9)	830 (1.6)
	장애인	4,778 (100.0)	33 (0.7)	210 (4.4)	949 (19.9)	3,582 (75.0)	4 (0.0)
2004	전체	23,284 (100.0)	1,063 (4.6)	2,450 (10.5)	6,071 (26.1)	11,899 (51.1)	1,801 (7.7)
	장애인	1,782 (100.0)	21 (0.7)	155 (6.6)	452 (21.0)	1,111 (71.6)	43 (-)
2005	전체	24,911 (100.0)	1,021 (4.1)	2,922 (11.7)	6,697 (26.9)	11,979 (48.1)	2,293 (9.2)
	장애인	2,043 (100.0)	49 (2.4)	322 (15.8)	676 (33.1)	955 (46.7)	41 (2.0)
2006	전체	27,286 (100.0)	1,106 (4.1)	2,971 (10.9)	6,176 (22.6)	14,929 (54.6)	2,124 (7.8)
	장애인	1,540 (100.0)	5 (0.3)	90 (5.8)	435 (28.3)	970 (63.0)	40 (2.6)

출처 : 여성가족부, 「200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7. 8.

2)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역시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남편 학대, 노인 학대, 기타(동거 친족 등) 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내 학대는 79.6%,

남편 학대 2.6%로 아내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내 학대는 전년대비 -16.9%인 반면 남편 학대는 8.3% 증가하였으며 기타 동거 친족 학대 14.9% 증가하였으며 노인 학대는 무려 30.9%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이 배우자에서 가족구성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표 21> 가정폭력 유형

(단위 : 건, %)

구 분	발생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2005	11,595 (100.0)	9,549 (82.4)	276 (2.4)	50 (0.4)	178 (1.5)	1,542 (13.3)
2006	11,471 (100.0)	9,127 (79.6)	299 (2.6)	50 (0.4)	233 (2.0)	1,772 (15.4)
전년대비	-1.1	-4.4	+8.3	-	+30.9	+14.9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상황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9%로 나타났으며, 전치 2주 이하 32.5%, 전치 2~4주 6%, 전치 1개월 이상 0.5%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가정폭력 피해상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상해없음	전치 2주 이하	전치 2~4주	전치1개월 이상
2005	12,775 (100.0)	7,601 (59.5)	4,401 (34.5)	706 (5.5)	67 (0.5)
2006	12,837 (100.0)	7,829 (61)	4,175 (32.5)	770 (6)	63 (0.5)

가정폭력 신고자 분포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인 아동교육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홍보와 불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의 신설 등이 요구된다.

<표 23> 가정폭력 신고자 분포

(단위 : 건, %)

구분	계	신 고				고 소	자체인지
		소계	피해자	신고의무자	기타		
2005	11,595	11,012	9,777	105	1,130	460	123
2006	11,471	10,836	9,404 (82)	53 (0.5)	1,379 (12)	551 (4.8)	85 (0.7)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가정불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24> 가정폭력 발생원인

(단위 : 건, %)

구분	계	음주	경제적 빈곤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 도
2005	12,775	2,696	1,330	1,835	5,818	1,096
2006	12,837	2,965 (21.3)	1,238 (9.5)	1,681 (13.1)	5,671 (44.2)	1,282 (9.9)

가정폭력의 폭행수단이 점차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순폭력이 가정폭력 폭행수단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나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폭행은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금은 92.9% 증가, 협박·모욕 65%의 증가 등 점차 강력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5> 가정폭력 폭행수단

(단위 : 건, %)

구분	계	단순폭력	도구이용	감 금	협박·모욕	재물손괴
2005	12,775	10,817	1,115	14	160	669
2006	12,837	10,595 (82.5)	1,285 (10)	27 (0.2)	264 (2.1)	666 (5.2)

가정폭력의 경우 누적되어 오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으로 대부분 초범으로 인식되는 부분 역시 실제 초범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4범 이상이 전년 대비 25.8%로 증가함에 따라 폭력의 상습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해자의 행태교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에 있어 가해자가 알콜중독 상태에서 폭력을 행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중독 등에 대한 치료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표 26> 가정폭력 가해자의 전과 유무

(단위 : 명, %)

구분	계	전과없음	1 범	2 범	3 범	4범이상
2005	12,775	11,568	798	251	69	89
2006	12,837	11,670 (90.8)	784 (6.1)	200 (1.6)	71 (0.6)	112 (0.9)

가정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40~49세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39세가 높게 나타남에 가정폭력의 발생이 가족해체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7>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

연도	계	연령								
		8세미만	13세미만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미상
2004	68,786	449		1,056	7,087	22,586	24,146	9,104	2,648	1,710
	100%	0.6		1.5	10.3	32.8	35.1	13.2	3.8	2.7
2005	74,910	94	479	1,271	7,123	21,732	24,759	9,656	2,547	7,249
	100%	0.1	0.6	1.7	9.5	29.0	33.1	12.9	3.4	9.7
2006	104,431	96	891	1,934	9,244	30,895	34,553	15,164	3,840	7,814
	100	0.1	0.8	1.9	8.8	29.6	33.1	14.5	3.7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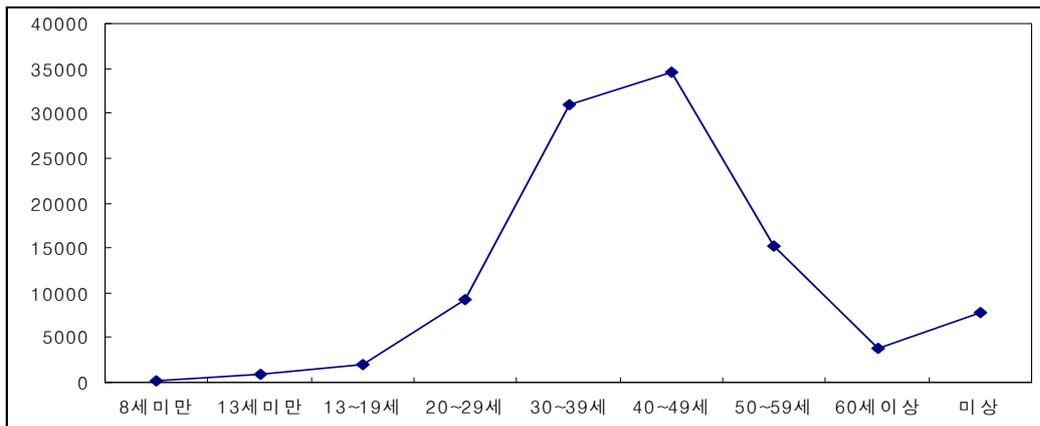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은 20대와 50~60대의 가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전년대비 10대 가해자의 급증은 가정폭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0대 가해자는 60대 가해자의 11배나 높게 급증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연령의 가정폭력 가해자의 증가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이론을 뒷받침하며 이들이 성장을 통해 다시 가정폭력 가해자로서 폭력을 재생산하는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는 폭력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폭력의 학습과 세대전이로 가정폭력은 가족문제의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연속의 구조에 놓이게 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력의 재생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표 28> 가정폭력 가해자 연령

(단위 : 명, %)

연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5	12,775	59	803	3,818	5,546	2,179	370
2006	12,837	241 (0.2)	850 (6.6)	3,655 (28.5)	5,634 (43.8)	2,204 (17.2)	470 (3.7)
전년대비	+0.5	+308.5	+5.9	-4.3	+1.6	+1.2	+27.0

<그림 4> 2006년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구성비



또한 가해자의 유형은 배우자가 86.6%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직계존속, 과거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동거하는 친족, 계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

연도	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기타
2004	71,025	62,629	2,144	2,891	871	205	406	1,879
	100%	88.1	3.1	4.1	1.2	0.3	0.6	2.6
2005	79,290	67,475	2,720	4,706	1,401	558	685	1,745
	100%	85.1	3.4	5.9	1.7	0.8	0.9	2.2
2006	111,216	96,338	3,417	5,435	2,168	833	1,016	2,009
	100%	86.6	3.1	4.9	1.9	0.8	0.9	1.8

*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 모두 표기 (피해자 총계와 불일치)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상담실적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건수를 추정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0> 가정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연말기준)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평균상담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	개소당	상담원 1인당
2004	182	398	398	-	193,439	90,497	102,942	1,062	486
2005	297	675	675	-	226,601	111,191	115,410	763	336
2006	372	2,311	815	1,496	283,705	138,949	144,756	763	348

비고 : '06년 이후부터 비상근직·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심리·정서부문, 수사·법적부문, 의료부문, 시설입소 부문,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3년 평균 59.5%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수사·법적지원에 있어서는 법률상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지원에 있어서 의료기관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단위 : 명, %)

연도	피 해 자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	기타
			수사 의뢰	수사 동행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치료 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2004	112,790	69,573	680	286	31,294	2,451	553	187	1,196	3,420	3,150
	100%	61.6	0.6	0.3	27.7	2.2	0.5	0.2	1.1	3	2.8
2005	139,407	82,442	661	468	35,824	2,773	6,270	681	1,937	3,322	5,029
	100%	59.1	0.5	0.3	25.7	2.0	4.5	0.5	1.4	2.4	3.6
2006	167,362	96,692	717	300	53,764	3,214	637	478	1,969	4,670	4,921
	100	57.8	0.4	0.2	32.1	1.9	0.4	0.3	1.2	2.8	2.9
	100	57.8	34.6				1.9			2.8	2.9

3. 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 및 관계 기관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성폭력상담소들이 개소되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1366을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시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긴급전화 시스템 마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one-stop 지원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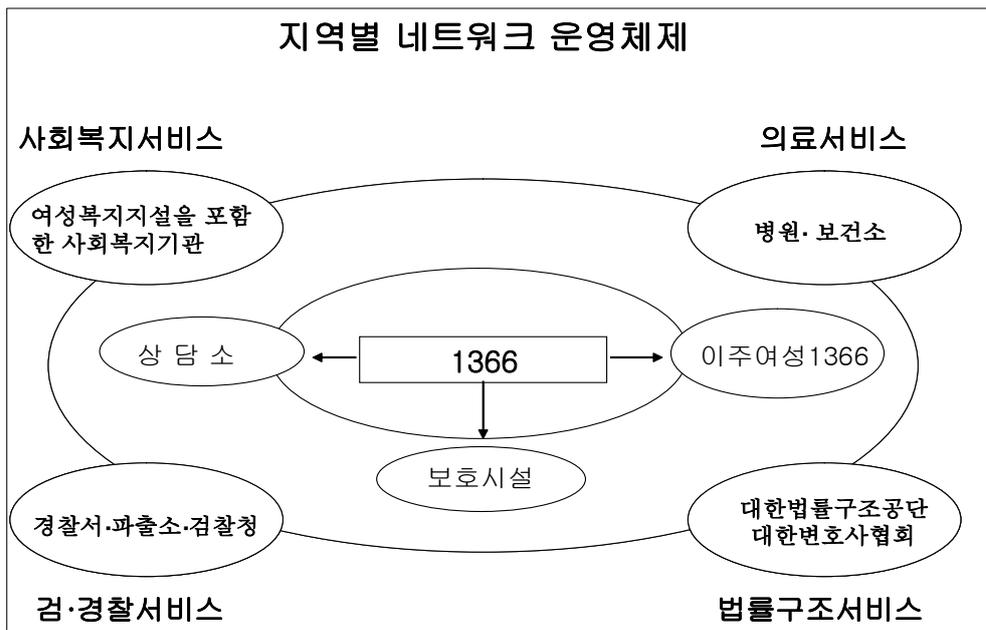
(1) 1366

1998년 1월 1일부터 여성위기상담전화 1366을 전국에 설치하여 24시간 상담 체계를 갖추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운영이 대부분 주간에 운영하고 있어서 야간에 피해를 입을 경우가 문제가 되었기에 24시간 핫라인 운영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1366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기존 상담원들과 자원 상담원으로 하여금 야간 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1998년 120권역, 1999년에는 142권역을 2000년에는 144권역으로 1366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 7월 이후 전국 144권역으로 확대된 1366을 16개 권역으로 재정비하고 각 기관별 최소 9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1366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1366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366은 주간시간대(09시~18시)는 전문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야간(18시~09시 이전)에는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기 개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를 하고 있다.

1366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그림처럼 1366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급구조 기관, 의료 기관, 사법기관, 법률 구조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5> 1366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제



한편 2006년 11월에는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1366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되었다.

(2)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지긴 했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 의료기관, 사법기관이 각각 분리되고 단절되게 경험하는 문제는 지속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의료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의료, 수사와 법률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6년 12월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전국 14개소이고 제주에는 한라의료원에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 one-stop지원센터는 진일보한 체계임에는 틀림없다. 우선 다양한 지원 센터를

한 곳에 통합하여 불편을 덜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논란은 기존 1366과 중첩을 피하고 전문상담소와 연계 구축 등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one-stop운영의 권한을 이양 받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의료기관, 제주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 상담소와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 협의체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폭력관련 서비스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여성폭력방지협의체를 구축 연 2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사법기관(경찰<112>, 검찰, 법원, 법률상담소,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기관(여성복지시설, 여성회관, 여성직업 훈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성폭력 관련 기관이 망라되어 있다. 이 협의체는 매년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하고, 서비스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하며, 서비스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나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¹²⁾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및 현황

정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는 반성폭력운동과 아동성폭력피해자 부모모임의 결성과 활동, 밀양집단성폭력사건 등 주요 성폭력 사건으로 발전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급격하게 늘어 1991년 1개소, 1995년 15개소, 2000년 62개소, 2006년 12월 현재 202개소로 확대되고, 지원 범위도 다양해졌다.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크게 다

12)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 공청회 자료

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의료적 지원

여성가족부는 현재 전국의 354개 병·의원(제주 5개소)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성폭력 응급키트를 보급하고 있다. 성폭력 응급키트는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의료용품으로 2004년 10월부터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전담센터, ONE-STOP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성병 감염여부 진단과 치료, 임신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진단서 발급과 기타 성폭력 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총 진료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 군, 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거쳐 초과된 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2) 법률 구조 지원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경우 검찰이 피해자를 대변하지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또는 형사적으로 역고소를 당할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민사·가사 및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를 위한 법률구조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상담 치료 지원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 교

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치료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여성장애인상담소와 YWCA 부설 여성의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이다.

(4) 피해자 직업훈련 지원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1개월 이상 입소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한 이가 국공립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때 1인당 35만원 이내의 직접교육비와 월 1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5)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4년 서울 연세대학교 병원에 처음으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만들어졌다.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구조 등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에 있다. 2005년에는 영남센터와 호남센터가 개소되었다. 이 센터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행정총괄팀으로 나누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세 개의 센터의 지원 내용은 1,039명에게 7,568건을 조치하여

피해자 1인당 평균 7.3건을 지원하였다. 지원내용으로는 의료지원이 2,315건, 아동 및 부모개입 치료가 3,944건, 법률지원이 1,312건이다.¹³⁾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및 현황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상담소는 2001년 142개에서 2006년 12월 현재 37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5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7개소에 대하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의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치료보호와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치료비는 시, 군, 구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배정이 된 치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 범위는 보건 상담 및 지도,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가정폭력인 경우 시, 군, 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치료 지원을 받은 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다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서 문제이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치료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관청은 구상권에 대해 언급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는 소극적으로 치료보호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3) 여성가족부, 200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7년 8월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기 위해 무료진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 전국 26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주지역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개소이다. 협약 기관에서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진료 범위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 가정으로의 복귀 전에 발생한 일상적 질병의 치료, 기타 피해자가 치료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 등의 제도에 의하여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무상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지역인 경우 해당 의료원 기관에서 진료과목에 한계가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2) 법률 구조 지원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왔다.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에 대한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등의 소송구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03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집행실적이 매우 좋고, 매년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고, 법률구조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요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법률구조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 예산은 2003년 318만원, 2004년 833만원, 2005년 1,087만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되었다. 2007년인 경우 1,400백만원을 여성발전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액으로 법률 구조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다. 법률구조는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두 곳을 통해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2006년 무료소송은 3,487건이었으며 승소율은 98% 수준이다.

(3) 상담 치료 지원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상담소 105개소(제

주 3개소)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54개소(제주 3개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동반자녀 심리치료, 아동집단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을 위하여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1개월 이상 입소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한 이가 국공립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때 1인당 35만원 이내의 직접교육비와 월 1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쉼터 퇴소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퇴소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경제적 지원(24.4%), 정서적인 도움(18.0%), 주거지원(15.1%)으로¹⁴⁾ 자립·자활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에서 성인 입소자들이 호소하는 당면문제는 경제적 문제 20.4%, 퇴소후 직업 15.5%, 퇴소후 취업 12.5% 등으로 주거와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¹⁵⁾.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 및 법률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런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영란(2007)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비전과 기회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여성인력개발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¹⁶⁾

14) 배인숙(2007), “쉼터 퇴소 여성의 실태보고”, 『쉼터, 그 이후의 삶』 서울여성의 전화,

15) 송성자 외(200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6) 박영란(200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 평가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4. 성폭력·가정 폭력 예방사업 현황

1)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제주도내 성폭력·가정폭력예방 활동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보고를 참조하면 총 1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총 252 회로 조사되었다.

<표 3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단위 : 회)

사업 내용	연차별 추진실적				
	계	2003	2004	2005	2006
예방프로그램 운영	172	40	42	44	46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52	60	62	64	6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

2007년 6월 현재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은 폭력피해여성 보호 시설 4개소, 여성폭력상담소 8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가 있다. 상담소 역시 통합상담소가 2개소이며, 성폭력 전담 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전담 상담소 3개소와 여성긴급상담소 1개소와 2006년 ONE-STOP센터가 개소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귀포 지역은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서귀포 지역에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활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¹⁷⁾

본 장은 기존의 연구를 최근의 변화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예

17) 2002년 발표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인용. 재구성

방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각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해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소는 전체의 57.3%, 성폭력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소는 41.7%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성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원 교육과 상담원 양성교육 및 재교육과 성폭력 근절·예방운동 캠페인 및 성폭력 추방캠페인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감수성 등 인식관련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예방강연, 각 학교 순회성교육, 일반인을 위한 성교육이나 의사소통기법, 행위자 이해 및 상담기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양강좌, 아동 및 노인학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대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 또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피해자 치유상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폭력대처방안, 개별치유 프로그램, 성폭력이나 아동치료 프로그램, 성폭력예방 인형극, 가정폭력방지법 홍보세미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거리캠페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심리상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면접상담 및 초기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치료 프로그램이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의 제공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피해자 대상의 예방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상담소간의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행위자 또는 위험집단을 대상으

로 하는 예방프로그램의 운영실태는 성폭력의 재발방지 또는 성폭력 발생억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개별교정 프로그램,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소년분류심사원 교육, 보호관찰 의뢰, 보호관찰소에서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프로그램 운영, 병원이나 법원에서 수탁한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이나 행위자 심리상담, 행위자 집단(소년원생)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녀상담이나 결혼과 성 상담 등과 같은 기타 상담, 교사 성교육 연수, 성교육 출강, 시설방문 성교육,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가해자 상담 및 교육 산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최근 3년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 기관 활동(2005~2007)
(단위 : 회)

구 분	2005	2006	2007
특강 및 워크숍	7	4	4
캠페인	4(공동주최포함)	2	4
교육·상담 프로그램	19	25	24
모니터활동, 캠프 등 기타	5	7	-
계	35	38	32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기관 방문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성·가정폭력관련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 연계 조사 활동¹⁸⁾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밤길 밝기”」 행사는 단체가 연합으로 공동참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성·가정폭력 의식개선을 위한 특강 및 워크숍, 각종 캠페인, 실태조사,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니터링, 상담 및 상담원 양성 교육 등의 꾸준한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각 기관의 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성·가정폭력에 집중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표기하였다. 각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간으로 양성평등 강좌 등이 수반되어 함께 논의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가정폭력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표 34-1> 2005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기 관	프 로 그 램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식조사 보고 간담회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밤길 밝기” - 성폭력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 성폭력피해자 치유 상담 워크숍 - 2차 피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여성상담소 10주년 기념식 “성폭력 없는 세상, 10년” - 제주도 청소년 성 의식과 학생 성교육 실태조사 - 성교육 자료집 만들기 - 제4기 성교육 강사 개발 프로그램 후속 교육 - 성폭력 수사, 재판 시 2차 피해 모니터링 - 순회 성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기능 증진 프로그램 -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워크숍 - 제1기 가정법률 및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건강한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 부모와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캠프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조절과 비폭력대화 강연회 - 여성폭력 예방 길거리 홍보사업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화장실 코팅엽서 제작 부착 -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제주YWCA부설 여성의 피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순회공연 - 가정 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제2기 행복나무 가꾸기” - 성폭력 수사, 재판 시 2차 피해 예방 모니터 교육 - 제3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성폭력 없는 안전한 밤길 밝기 캠페인 -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 내적 치유와 자기성숙 워크숍 - 성희롱 예방 교육(연중) - 건강한 가정 양성교육(연중)

기 관	프 로 그 램
제주지체장애인 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플러스 파워 여성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추방 캠페인 - 여성장애인성폭력추방을 위한 더불어 문화 한마당 - 2차 피해자 모니터링 - 부부학교 - 찾아가는 성교육 - 1318 장애딸들의 외침 “나도 여자랍니다”

<표 34-2> 2006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기 관	프 로 그 램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밤길 밟기 두 번째” -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girl talk girl power - 성폭력 추방기간 전시회 -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 성교육 실태 조사에 따른 토론회 - 제5기 성교육 강사 프로그램 개발 - 정신지체 성교육 자료집 발간 - 순회 성교육
서귀포상담센터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멘토링 사업 “새로운 희망 밟기” -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함께 하는 행복 열매 만들기”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캠프 “행복지수 높이기” -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 및 폭력에 관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프로그램 - 가정폭력 상담 실무 향상 능력을 위한 법률교육 -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관계와 자기성장 집단 상담
제주YWCA부설 여성의 피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 합성이 성교육 연구회 창단식 - 2006 여성발전기금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 극단 아기별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행복나무 가꾸기” - 제5차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기 관	프 로 그 램
제주지체장애인 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영상편지(개소식 기념)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찾아가는 성교육 - 여성장애인 보여주는 성과 성 정체성 테마 모델 - 나를 보여주는 힘! 내 안에 있다(성폭력 피해여성 치료 지원) - 여성장애인 보여주는 성, 성 정체성 문화 한마당 - 출발! 여성장애인 성권, 건강권, 모성권 찾아가는 여정 - 성폭력 추방 캠페인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밤길 밟기 두 번째”

<표 34-3> 2007년 운영된 기관별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기 관	프 로 그 램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근절, 평화 남성이 된다! - 한길정보통신학교 비성범죄자 인지 행동치료 - 제주보호관찰소 성폭력 가해자 교육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밤길 밟기 세 번째”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 모니터링
서귀포상담센터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 및 폭력에 관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행위자 자조모임 -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평화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부부 대화법”
제주YWCA부설 여성의 피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도서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일일상담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강사 트레이닝 - 장애 성상담 및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 모니터 요원 교육 - 상·하반기 찾아가는 성교육 - 장애여성 폭력 피해 실태조사 - 성폭력 예방 캠페인 -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 심신회복 캠프 - 여성장애인 폭력 실태 결과 발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성·가정폭력 관련 실시된 프로그램만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별 특화를 통한 향후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표를 위한 워크숍의 부분은 각 기관의 공동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전개의 방안의 필요성과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역시 지역별 권역을 구분하여 순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성·가정 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점검

(1)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있어 고려 요인

현재 성폭력 관련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이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피해자 프로그램과 가해자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성·가정폭력의 재범 발생율과 연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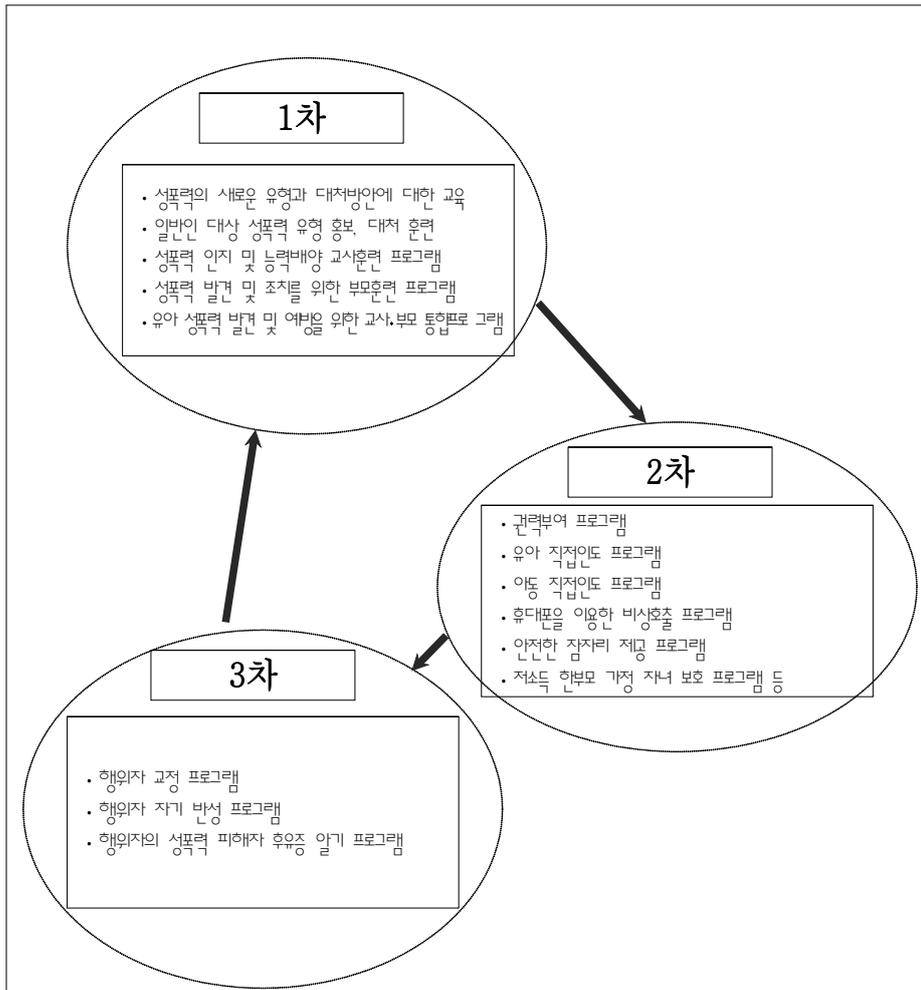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저조한 것은 전문인력 부족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행위자 또는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교육은 성폭력의 재발방지 또는 성폭력 발생억제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행위자의 특성에 기인하므로 교육 역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개별교정 프로그램,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지역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단계별 예방 수준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 때, 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사회적 잠재요인에 대한 검토와 발생방지부터 치료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넓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세분화하면 단계별 주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6>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용



위 그림에서 보듯이 우선, 1차적 예방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과 성폭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2차적 예방프로그램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하여 성폭력의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이는 피해위험집단과 자해위험집단 모두에게 해당하는 예방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차적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이 이미 발생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고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2)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있어 고려 요인

가정폭력 관련 예방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세대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중심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행되고 있는 성교육 역시 “건강과 보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에 따라 성·가정폭력의 예방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성·가정폭력의 통합적 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그 내용이 가정폭력만을 다루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른 청소년발달상의 인지, 정서, 사회적 영역을 포함함은 물론 폭력에 대한 민감성 즉, 무엇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인식을 갖출 수 있는 등 포괄적인 인권 향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교육 자료와 내용이 아이의 정서발달단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안전감과 신뢰감 손상 등 간접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은 물론 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힘 역시 길러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정에 있어 분노와 폭력을 구별하는 기술과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 및 기술을 꾸준히 습득·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예방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폭력지지적인 남성문화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성폭력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폭력예방 및 건강한 성역할모델

링 확립을 위한 교사의 직무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연령·대상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다른 수준을 고려한 일차-이차-삼차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과 관계기관 현황은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복지시설은 크게 모부자복지시설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부자복지시설은 4개소로 정원 247명 가운데 128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35> 모부자복지시설 현황

구 분	개소일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보호인원	
					정원	입소자
모자보호시설	'77. 8. 10	제주모자원	제주시	5명	43세대 172명	29세대 78명
모자일시보호시설	'99. 3. 30	한빛여성의 쉼터	서귀포시	5명	30명	10명
미혼모시설	'04. 6. 22	애서원	제주시	8명	35명	30명
미혼모공동생활가정	'07. 3. 27	아기사랑엄마의 집	제주시	1명	10명	10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소로 정원 72명 가운데 42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모두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다¹⁹⁾.

19) 여성폭력시설 가운데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있으나 본 논의는 성폭력·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논의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은 논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표 36>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구 분	개소일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보호인원	
					정원	입소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02. 9.26	제주YWCA부설 제주여성의 쉼터	제주시	3명	12명	6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9.11.24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쉼터	제주시	4명	30명	10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04. 7.26	생명의 썸	제주시	3명	20명	16명

성·가정폭력 상담소는 8개소로 2007년 6월 현재 3,212건이 접수되었다. 통합상담소가 2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긴급전화 1개소가 운영 중이며, ONE-STOP센터가 최근 개소하였다.

<표 37> 성·가정폭력상담소

(2007. 6. 현재)

구 분		상담건수	소재지	종사자
통합상담소	제주YWCA 부설 여성의 피난처	919건	제주시	5명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497건	제주시	4명
성폭력상담소	제주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231건	제주시	3명
가정폭력 상담소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상담소	1,185건	제주시	4명
	서귀포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94건	서귀포시	2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제주가정폭력상담소	886건	제주시	3명
여성긴급전화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2,149건	제주시	8명

Ⅲ.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1. 미국의 사례

1) 미국의 실태²⁰⁾

미국 여성 3명 가운데 1명꼴로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6분에 성폭력 사건 1건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10개의 사건 가운데 보고되는 것은 1개의 사건이며, 무엇보다 미국의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다는 데 있다. 또한 성범죄를 하는 가해자의 경우 성폭행 특히 강간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의 44%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며, 80%는 30대 미만의 여성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역시 성폭력에 있어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2/3이며, 친밀한 정도 역시 30% 정도에 달함에 따라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은 대부분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성폭력(강간)이 2006년 272,350건에 달함에 따라 폭력에 있어 여성의 노출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²¹⁾.

또한 가정폭력은 85~95%가 여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졌으며, 500,000명이 넘는 여성이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매년 530만명 정도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1,232명의 여성이 남편 등 친밀한 사이로부터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²⁾.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이하 VAWA)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20) 김엘림. 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 실태와 과제」. 참조

21) <http://www.rainn.org/statistics/index.html>

22) <http://www.aidv-usa.com/Statistics.htm>

기 위해 폭력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성폭력’을 ‘특수 연해지역’과 미합중국 관할구역 혹은 연방교도소 어디서든 통용되는 미국형법전의 제18편 중 제109A장이 금지하는 행위로 가중성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미성년자와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sexual abuse of a minor or ward), 모욕적인 성접촉(abusive sexual contact), 성학대로 인한 사망(sexual abuse resulting in death)을 말한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피해자의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 혹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자녀를 두고 있는 자,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동거한 적이 있는자, 지원금을 받은 지역 관할의 가정폭력법에 의한 사실상의 배우자, 배우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인이 범죄한 강력법과 경범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여성을 위한 안전거리(제1편 성폭력에 관한 사항),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제2편 가정폭력), 여성의 민사상 권리,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재판, 관계법 개정, 전국적인 스토크와 가정폭력의 감소, 매 맞는 이민여성과 아동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과 예방을 위한 지원금을 명시하였다. VAWA에 공중보건과 인적 서비스법의 제14의 A편은 강간예방교육(Public Health and Human Service Act)을 위한 배당금 사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즉, 연방의 공중보건과 인적 서비스부의 장관이 주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2000년까지 2억5백만 달러를 성폭력 감소를 위해 주정부에 지원하고 주정부는 지원받은 금액을 강간위기센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핫라인의 운영, 정보지 준비, 서비스가 잘 미치지 않는 인종, 민족, 언어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 성폭력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과 인식을 증진시키거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정부가 최소한의 총액에서 25%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가정폭력 예방 역시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평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실시하는 대상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등 각

각 실시하고 교육, 법, 심리학 전문가, 매 맞는 여성들의 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단체, 주 협의회, 자원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미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①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의 프로그램

미국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있어 아동, 건강, 이민여성, 국제 활동, 사법관련 활동, 공공정책, 청소년, 직장 등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www.endabuse.org 이하 FVPF로 지칭함)의 프로그램 가운데 예방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FVPF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인해 삶이 건강하지 못한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소년에서 남성으로 교육시키기 : 폭력 예방 프로그램

<그림 7> coaching boys into Man



출처 : <http://www.endabuse.org/cbim/>

<그림 8> 소년에서 남성으로 교육시키기

아들들을 가르치는 방법

일찍 알려 주세요 : 아동들에게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너무 이르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절망감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인지 알려주세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아들 곁에 있어주세요 : 그냥 아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같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남자 어른 누군가가 그들 옆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들어 주세요 : 아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아들이 폭력을 당한 친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은 아들 친구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아들이 그 화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당신에게 와서 말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예를 보여 주십시오.

먼저 이야기 하세요 : 아들들은 아마 먼저 다가와서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살펴 보십시오. 아들이 여성폭력에 관한 것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여성을 비하하는 식의 스포츠 활동이나, 농담, 비디오 게임, 노래 가사 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망설이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성 친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들이 알고 있음을 확인 하십시오.

모범이 되세요 : 아버지, 코치, 누구든지 남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남자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중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지키십시오.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의 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아들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아들들 자신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대할 것을 강조 하십시오.

반복하여 가르치세요 : 단 한번만의 가르침은 불충분 합니다.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 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폭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Founding Father의 멤버가 되세요 : 아버지들은 여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림 7>은 소년에서 남성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왜곡된 남성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남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주변으로부터 올바르게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7개의 과정을 익히는 것으로 “Teach Early”, “Be there”, “Listen”, “Tell Him How”, “Bring it up”, “Be a Role Model”, “Teach Often”, “Become a Founding Fath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Helping Parents Talk with Sons and Daughters About Violence- “Connect”

부모들을 위한 “Connect”라는 잡지를 통해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있어 발생하는 폭력, 성폭행, 학교 내에서의 폭력, 비디오게임 폭력, 분쟁지역에서 무기의 하나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강간 등 다양한 여성 폭력의 민감한 주제들을 차별성 있게 다룸으로써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상담코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임파워먼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9> Connect 홈페이지



출처 : http://www.connect-endabuse.org/index.php?page=current_issue

㉔ “Engaging Teachers as Ambassadors for Violence Prevention”

폭력에 대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폭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계층이 교사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실 내에서 교수법과 폭력 예방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㉕ Community Overcoming Relationship Abuse(CORA)의 프로그램

주로 미국의 San Mateo시의 가정폭력의 중재와 예방에 치중함으로써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24시간 상담과 긴급조치 서비스, 피난처 및 숙소 제공, 법률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과 함께 학교·청소년 단체·청소년 시설·사회복지시설·법 관련 기관·지역사회단체·문화단체·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림 10> Community Overcoming Relationship Abuse(CORA)의 홈페이지



출처 : <http://www.corasupport.org/>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폭력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과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24>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안내문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폭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1>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안내문

가정폭력 및 데이트의 폭력에 관한 통계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은 성별, 인종, 나이, 직업, 교육정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관계 셋 중 하나는 폭력적입니다.

☆36%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관계에서의 폭력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성인들 관계 세 개 중 하나는 폭력적입니다.

☆보고된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중 85%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입니다.

☆나머지 15%는 레즈비언 관계에서 혹은 게이 관계에서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60%는 미래의 배우자에게 똑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세 명의 여성 중 한명은 현재 남편 혹은 남자친구 혹은 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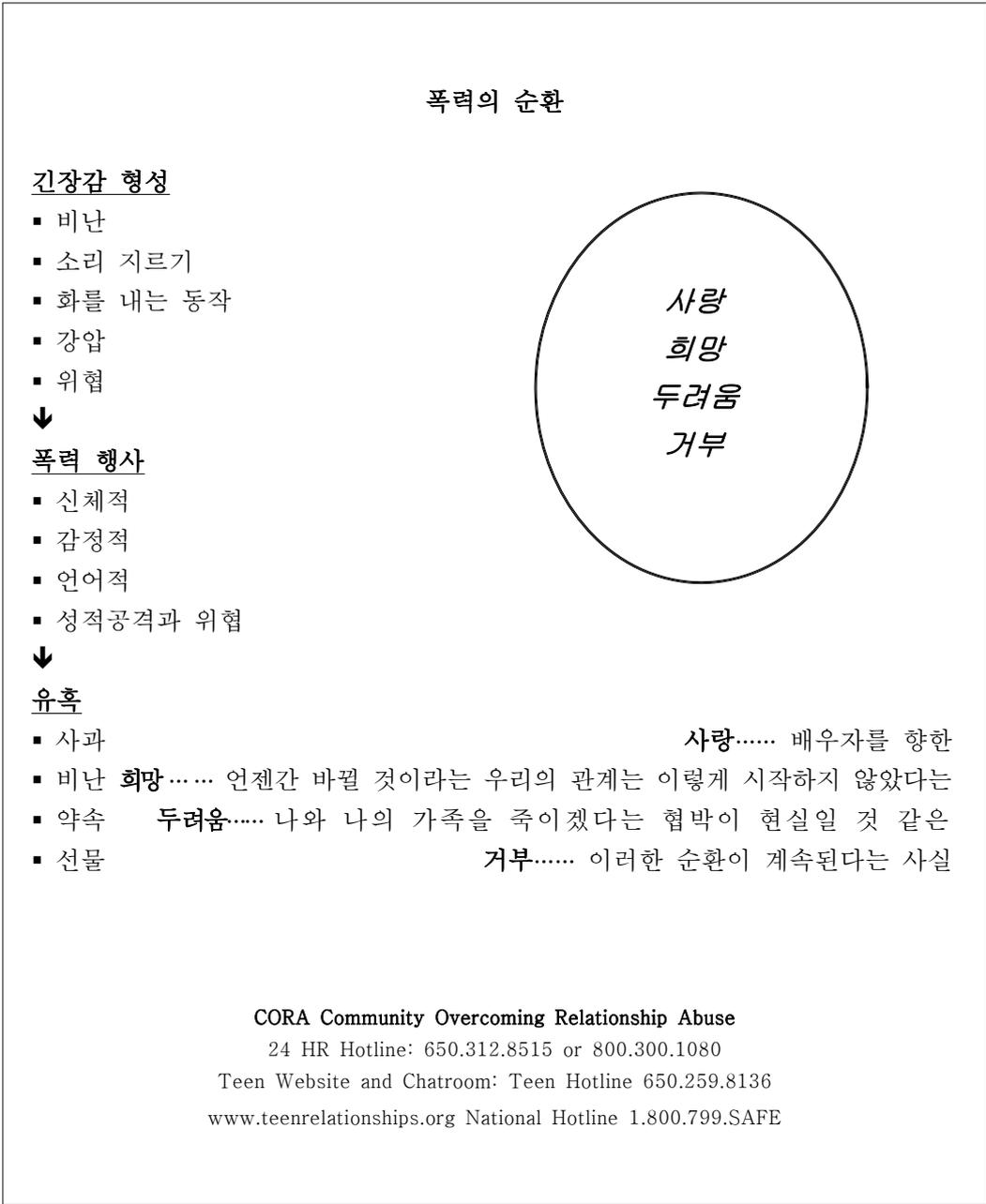
CORA Community Overcoming Relationship Abuse

24 HR Hotline: 650.312.8515 or 800.300.1080

Teen Website and Chatroom: Teen Hotline 650.259.8136

www.teenrelationships.org National Hotline 1.800.799.SAFE

<그림 12> 폭력의 순환 안내문



<그림 13> 안전을 위한 안내문

안 전 계 획

당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

- 911에 전화 하세요.
- CORA 핫라인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800-300-1080
- CORA 법률 정보 전화 상담에 전화해서 금지명령과 같은 법적 선택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세요. 650-529-1855
- 긴급 은신처에서 머무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위험에 처했을 때 갈만한 장소를 당신이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찾아보세요.
- 핫라인을 포함해서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외워 두세요.
- 당신이 위험해 처했을 때 또는 911을 부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가족, 친구, 이웃, 자녀들과 만드세요.
- 집 주변의 비상구 혹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잘 알아 두세요.
- 긴급 전화를 대비해서 잔돈을 준비해 두세요.
- 긴급 시 입을 옷, 돈, 수표, 차여분 키, 중요한 신분증, 이민 서류, 병원 서류, 그리고 처방전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겨 두세요.
- 응급 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을 사진 찍어 잘 보관해 두세요.
-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이미 난폭한 배우자를 떠났다면

-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전화나 받지 마세요.
- 열쇠를 바꾸세요.
- CORA 핫라인에 전화해서 비밀 주소와 홈 알람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이 장치된 휴대 전화를 신청하세요.
-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세요.
- 자녀들의 학교에도 알리세요. 그리고 학교 당국에 방과 후 자녀를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 직장에도 알리세요. 만약 배우자가 직장에 찾아오면 경찰에게 전화해 달라고 경비와 동료들에게 말하세요.
- 전 배우자의 의심스럽거나 위협적인 행동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당신의 행동을 믿으세요. 갑작스런 위협에 처해 있다면 911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안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CORA 서포트라인에 전화하세요. 800-300-1080. 당신이 안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친척, 커뮤니티 그룹, 기관, 종교 단체 등을 생각해 보세요. 고립되어 지내지만 않으면 당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ORA Community Overcoming Relationship Abuse

24 HR Hotline: 650.312.8515 or 800.300.1080

Teen Website and Chatroom: Teen Hotline 650.259.8136

www.teenrelationships.org National Hotline 1.800.799.SAFE

③ Minnesota Program Development(www.duluth-moel.org)

평등주의에 원칙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중재 프로젝트’, ‘학대 받은 여성을 위한 사법 프로젝트’, Duluth 방문 센터운영, ‘Mending the Sacred Hoop’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7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료 프로젝트로써 가정폭력중재 프로젝트가 있으며, 학대 받은 여성을 위한 사법 프로젝트를 ‘National Clearinghouse’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인디언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 “가정폭력중재프로젝트”

프로그램 1. 3일 교육프로그램 - 활동가 중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정폭력중재 프로젝트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된 커뮤니티 대응을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지역 활동가, 가정폭력 관련 업무 종사자, 가정폭력 사례들에 대한 중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커뮤니티 리더, 범죄 및 인권 분야의 변호사, 가정폭력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한 3일간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지역의 가정폭력 문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 가정폭력 중재를 위한 관계 기관간의 유대감 형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평가, 지원 조정안 작성 등을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폭력 이론 및 그 이론들과 가정폭력 중재와의 관련성, 가정폭력 중재를 위한 통합된 커뮤니티 체계의 기본적인 활동 및 요소, 공통적인 철학적 틀 세우기, 정책 개발, 변호사들과 업무 관계 형성, 범죄자들의 위험성 정도 측정에 대한 실제적인 길잡이,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 법집행과 사법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효과적인 질서 확립을 위한 가정폭력 교육 제공 등을 학습하게 된다.

프로그램 2. 2일 교육프로그램 - 보호관찰관대상 교육프로그램

가정폭력-보호관찰 대응법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응하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이 학대자와 피해자를 적절하게 다루는데 있어 개별 정보와 특화된 훈련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호관찰 과정에서 단편적인 시스템과 광범위한 업무, 부족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재판관들에게 어떠한 권고를 하고, 범죄자를 다루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가를 다시 교육받게 된다.

2일간의 교육기간동안, 참가자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전략을 학습하고 향후 파트너 기관과 업무관계 향상, 피해 여성과 대변인에게 효과적인 응답,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3. 2일 교육프로그램 - 법집행 대응하기

2일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업무 가운데 가정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받는 직원들의 기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법집행관련 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정책 개발과 법집행기구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법집행관련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된 커뮤니티 대응 체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변화하는 법집행의 역할, 학대관계의 역학관계,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된 커뮤니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법집행 체제 마련, 피해자와 용의자 및 아동을 회견하는 방법, 정확한 근거 마련, 정당방위와 유련한 용의자 판결,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법, 교살·희롱·스토킹 등의 사건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프로그램 4. In Our Best Interest

본 프로그램은 학대받은 여성, 대변인, 여성그룹의 중재자,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2일간의 프로그램으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그룹을 만들고 교육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교육 도구

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활동들을 검토한다.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공포, 여성폭력에 기여한 계급차별 주의에 대하여 토론한다. 여성들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대변자, 교사가 되는 의미, 자유로운 그룹 과정 만들기,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 이용 사례, 성차별주의와 다른 형태의 차별을 관련시켜 설명하기, 교육을 실천으로 옮기기, 개인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5. 가정폭력관련 방문 센터 설립 및 운영

방문자 센터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방문자 센터가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공범자가 종종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안전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존중받고 더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가 필요하다. Duluth가족 방문 센터는 비교적 잘 개발된 가정폭력 통합 커뮤니티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적인 모델사례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방문 센터의 구조 디자인과 절차 등을 경험하면서 센터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족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학습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중재기관의 역할, 피해자 및 가해자 그리고 아동들과 효과적으로 관계 형성하기, 긍정적이고 안전한 방문 센터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에 초점을 둔다.

프로그램 6. 폭력남성들을 위한 교육과정(Level 1 & 2)

남성을 위한 비폭력 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 혹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Duluth Model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쌍방향적인 비폭력 수업을 개설하는데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가해자 프로그램이 중재기관의 대응기술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대변자, 피해여성, 법원과 관계 형성하기, 각 여성폭력 기관과의 협약 설정, 피해자 안전 우선, 남성들을 위한 비폭력수업에서 필요한 대화의 기법, 절제 기록 일기, 활동, 비디오 등의 사용법, 역할극 활용을 통한 지배적이지 않은 행동 가르치기 등의 내용이 있다.

프로그램 7. 폭력남성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기독교 신자 중심)

앞서 논의된 프로그램 6과 위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나 가해자 프로그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신자 대상의 3일간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Changing Men’, ‘Changing Lives Ministry’, ‘가정 폭력 중재 프로젝트’ 등 기독교 단체의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된다.

남성의 폭력을 문화 속에서 양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커리큘럼의 과정에 있어 Duluth Model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독교 문화를 중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을 위한 비폭력 수업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는 물론 ‘성직자가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 어떻게 협조하는가?’, ‘성직자가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폭력 중재 프로그램 설계자, 여성의 대변인, 성직자, 폭력적인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남성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가해자 등이다.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 : “Mending the Sacred Hoop”

이 프로그램은 폭력을 당하는 원주민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각 원주민 부족들의 특유한 환경에 기초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특화된 대응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미국 내 각각의 인디언 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보조하여 원주민 공동체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Nin Gikenoo Amadimin(We Teach Each Other): 사회적 변화를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 ‘원주민 남성들을 위한 재교육 프

로그램 개발」, 「부족 공동체의 통합된 커뮤니티 대응력 창조」, 「원주민 부족 내에서의 성폭력」, 「가정 폭력 교육」, 「방문센터 설립 및 운영」, 「가정폭력 이해와 대응 및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38> 프로그램 등록비²³⁾

프 로 그 램	일 시	장 소	비용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된 커뮤니티 대응법	2007. 5. 9~11 2007. 9. 26~28	Duluth, MN	\$500
가정폭력 - 법집행의 대응법	2007. 7. 30~31	Duluth, MN	\$325
가정폭력 - 보호관찰의 대응법	2007. 7. 9~10	Duluth, MN	\$325
In Our Best Interest	2007. 6. 5~6 2007. 8. 23~24 2007. 11. 12-13	Duluth, MN Duluth, MN Indianapolis,IN	\$325
폭력남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기 - 레벨 1	2007. 4. 18~20 2007. 6. 25~27 2007. 8. 6~8 2007. 11. 14~16	Duluth, MN Duluth, MN Duluth, MN Indianapolis,IN	\$500
폭력남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기 - 레벨 2	2007. 7. 19~20	Duluth, MN	\$325
폭력남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기 - 기독교 신자	2007. 9. 17~19	Duluth, MN	\$500
방문 센터 설립 및 운영 - 가정폭력 관련	2007. 10. 11~12	Duluth, MN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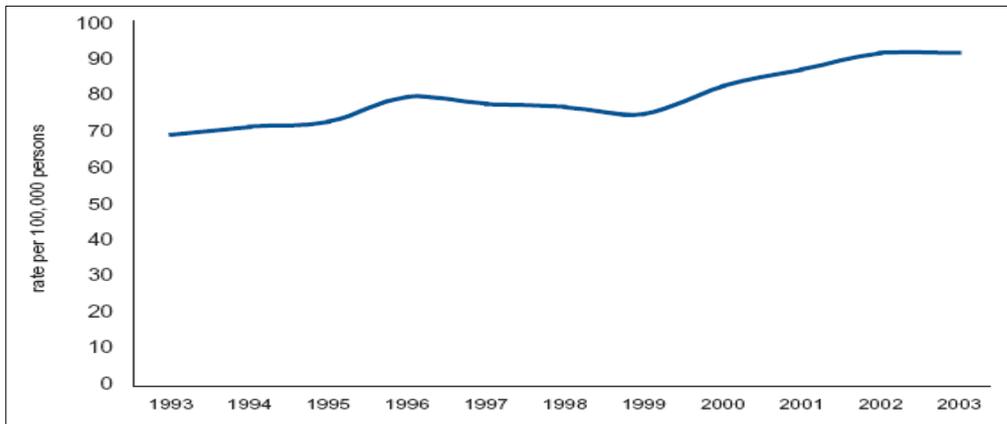
2. 호주의 사례

호주의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 원주민 남성 10명 가운데 1명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에 있어 성폭력은 여

23) 2007년 교육 프로그램 공지 사항을 재구성하여 소개하였다.

성만을 대상으로 일어나기보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남성과 남성간의 성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해자의 연령 역시 저연령대인 1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4> 호주의 성폭력 발생비율



출처 : http://www.aic.gov.au/stats/crime/sexual_assault.html

또한 호주 정부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법령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개정을 위한 노력을 여성지위청²⁴⁾의 의견 수용을 통해 MCCOC(Model Criminal Code Officers Committee)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의도적인 성적 행위는 불법으로 동의연령 이하의 아동과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적용시켰다. 성범죄를 구별하는데 있어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아동이 남아이건 여아이건 모든 아동과의 성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행위가 역시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법으로 모든 성인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국가전략은 11개로 ① 지역사회에서 언어로 통역되는 적절한 위기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응급센터의 치료지침서 마련과 훈련된 요원에 의한 무료 처치, ③ 여성 피난처의 소득지원 정보와 서비스 제공, ④ 사회보장부의 긴급 재정 구제, ⑤ 여성폭력문제에 관한 서비스 시설, 경찰, 법원 및 교

24) 호주의 여성지위청(office of the Status of Women)은 연방총리·내각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리와 여성 지위에 관한 총리 보좌 장관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조언의 제공과 관계 법령등의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통합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모델을 조사, 평가하며 체포, 고발, 고소, 상습적 범행의 비율 및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사건의 처리에 대한 연구 감독, ⑥ 시골과 오지 여성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안전한 주택시설의 우선적 이용, ⑦ 여성들의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녀양육과 수입의 지원, ⑧ 법원 출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시설 개선의 필요성 조사, ⑨ 판사, 치안판사, 변호사, 경찰, 의사, 건강전문가, 중재자, 상담원 및 교사와 같은 집단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에 대한 이해 제고, ⑩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거나 여성의 성을 왜곡하는 인쇄물이나 비디오물 등급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침의 심화 발전, ⑪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과 성문제에 대한 교재를 계속 개발, 보급 등이다.

1) 통합대응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례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례²⁵⁾를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의 여성폭력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은 피해여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모범 사례 등을 홍보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개선과 체계 등을 강화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크게 정책적인 측면과 예방 홍보로 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여성폭력과 관련된 정책 발굴과 연구, 정책 발의 등의 활동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폭력(가정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통합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전문적인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시설, 경찰 치안이 함께 서비스됨에 따라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원, 경찰, 가정폭력 서비스가 일원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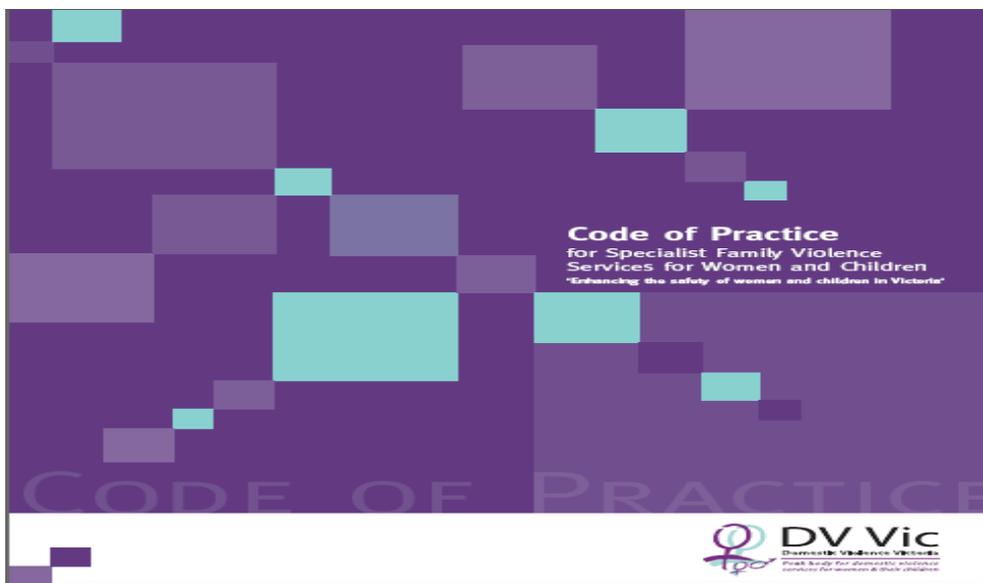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따른 사망건수와 부상자의 감소, 가정폭력

25) 본 사례는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쉼터, 그 이후의 삶」(2007. 11.29~30)에서 발췌 재정리하였다.

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경찰과 법원의 대응 강화, 폭력적인 남성들에게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책임이 증가되고, 어린아이들의 안전 욕구와 권리 강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공, 지역사회 구성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확대를 통한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 실천 규범의 마련으로 실제 여성의 피난처가 지역적으로 확산되었다. 각각의 출발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일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것을 통합대응(Integrated Family Violence Respond)으로 발전시키고 경찰의 대응 표준화를 통해 시설은 물론 경찰 등 통합체계구조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지원하게 되는 각 기관 역시 공동의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전과 보안조치, 가정폭력 정의, 접근과 처리 과정, 일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활동을 위한 안내서, 타 가정폭력 시설들에 대한 정보, 각 기관의 정보 교환 및 사생활 보호, 각기 다른 언어의 논쟁 묘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천 등이 공동된 매뉴얼을 통해 지원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림 15>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가정폭력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의 실천규범



이러한 공동 매뉴얼 보급과 실천의 노력은 실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안전 강화를 통해 각 시설들의 이용을 보장하고,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사회 시설과 기관이 합동함에 따라 효과적인 통합과 협동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천규범은 각각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활동가들이 활동에 있어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성하였다.

우선 1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가정폭력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의 실천규범(Code of Practice for Specialist Family Violence Service for Women and Children)에 대한 소개와 배경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장은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가치관 원칙, 그리고 가치관을 포함한 가정폭력 정의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념은 인권, 사회정당성, 여성주의적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장과 4장은 전문 가정폭력 시설의 개요를 통해 시설의 서비스 체계를 설명하고, 전문화된 지원을 위하여 상황에 맞는 정보의 제공기준과 피해여성의 연계를 위하여 시설에서의 역할과 가정폭력 여성의 자활을 위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장은 여성폭력 시설의 조직구조와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어린이의 심리적인 지원과 치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장은 방법론으로써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를 위한 실천 방법을 기술하였다.

7장과 8장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연계서비스 체계와 각 관련 시설과 가정폭력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기중재, 사례관리, 옹호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9장은 용어집, 10장 부록, 11장 참고문헌 및 참고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가정폭력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실행규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공통된 언어와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통해 각 가정폭력 영역에 있어 활동하고 있는 해당 단체들 간의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로 다양한 여성을 이해하는 지

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침서는 권리, 안전, 어린이, 권한, 다양성, 접근성, 공정성, 협력과 이행, 의무, 책임, 세력, 정당성, 피해자 옹호 등을 기본 개념으로 동일화시킨 매뉴얼을 통해 가정폭력에 통합 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뉴얼은 연계를 가장 주안점에 두고 있다. 가령 빅토리아 경찰과 가정폭력 입소, 피해자의 위기 대응 등 이러한 연계를 위하여 대표적인 방법으로 경찰 팩스-반응(Police Fax-Back)을 설명하고 있다.

팩스-반응 과정(Fax-Back Process)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하였을 때 피해자를 조사하여 가정폭력 위기나 입소 시설과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기록한다. 기록된 문서는 지정된 가정폭력시설로 팩스로 보내지고, 피해자(대부분 여성)에게 연락하여 정보 제공, 평가, 상담, 지원, 추천 활동, 응급 및 위기 숙박 등이 제공된다.

팩스 수신 뒤, 경찰에서 팩스 내용이 검토되고 적절한 시설과 피해자와 연락이 취해진다. 연락은 전화를 통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시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절박한 위험이나 위기상황일 경우 가정폭력 시설로 안전하게 응급 수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경찰은 실행규범(Section 3.1.4)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따른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의 책임 하에 연계의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안전은 물론 자녀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아동보호 시설과 가정폭력 시설이 함께 관여하기도 한다.

팩스-반응은 사생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자발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제공되는데 이때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호주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대다수의 여성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여성은 다시 가정폭력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호주의 사례는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매뉴얼의 마련을 통해 활

동가에게는 치밀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정의와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폭력 시설 체계 안에서 각 시설이 어떻게 연계하고 협동하는가에 대한 근간을 마련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다.

2) Zig Zag's Sexual Assault Service

퀸스랜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2~25세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정보 및 심리적 지원, 의료적, 법적, 안전에 관한 서비스 제공 다른 기관의 소개와 상담, 정보집단과 치료 집단의 두 유형의 지지집단을 운영한다. 성폭력에 대한 의료적·법적 정보와 자료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3) Northern CASA(Center Against Sexual Assault)

성폭력 피해자와 배우자, 친구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4시간 응급보호, 의료서비스, 직접상담, 전화상담, 집단활동, 젊은이를 위한 팀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피해자 그룹, 젊은 여성 피해자 그룹, 피해여성의 남자 배우자를 위한 그룹, 남자 피해자 그룹, 동성애자(레즈비언) 피해자 그룹, 여성을 위한 이완그룹, 젊은 남성을 위한 그룹 등을 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몇 개의 지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과 공식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를 신고 2시간 내로 센터로 인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일본의 사례

일본 경찰청의 보고자료(平成19年 3月8日 警察廳)에 의하면 배우자 폭력 상담과 신고 건수는 2005년에 비하여 2006년 8% 증가한 18,236건으로 발표되었

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발생 시간은 밤 10시에서 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平成18年 보도자료)의 경우 가해자 연령은 30대, 40대, 2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연령은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세 미만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전체의 72.8%로 나타났으며, 내연관계 13.3%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에 있어 성폭력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가정폭력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본의 사례는 여성이 폭력시설을 통해 어떠한 자립자활을 공식·비공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돗토리현(鳥取縣)의 민간 피난처(Shelter)인 미모자 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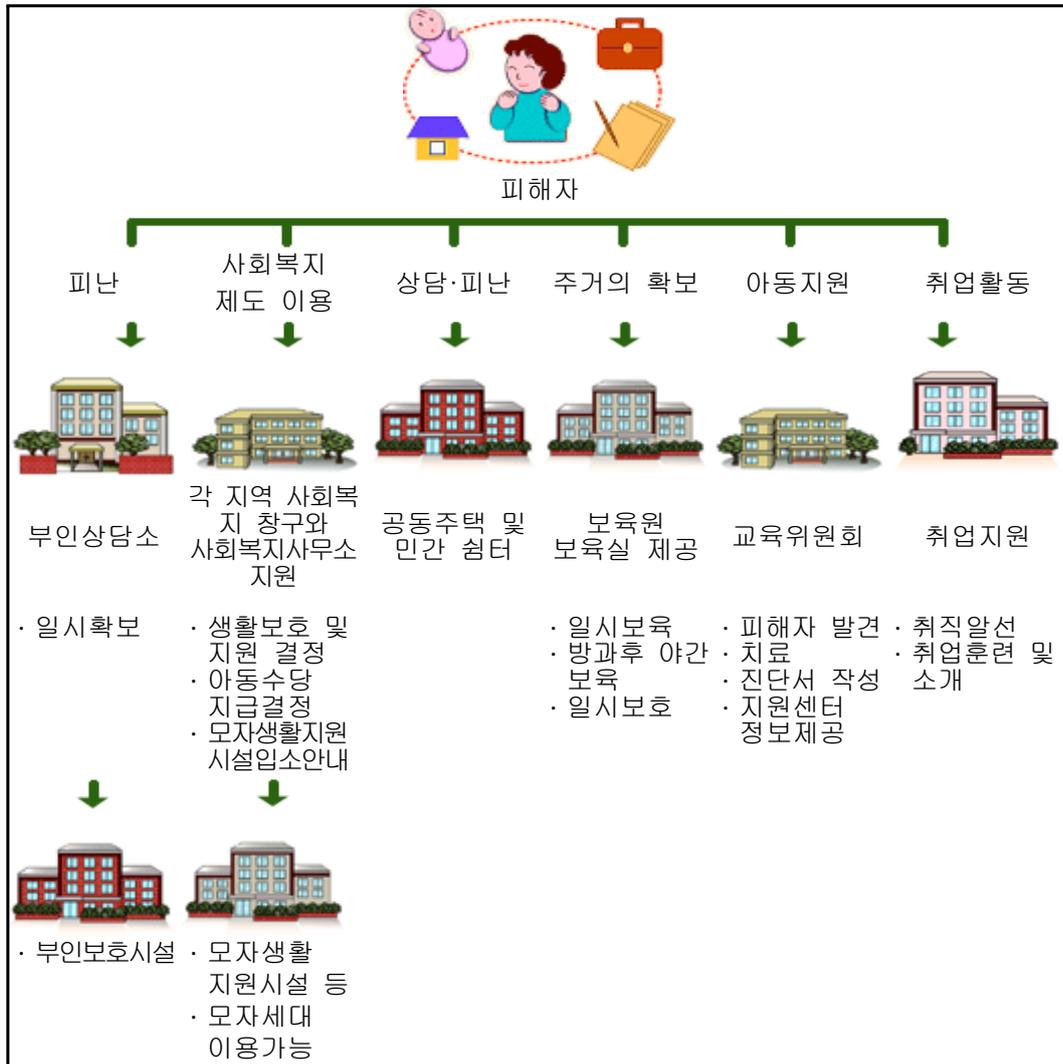
일본의 민간 쉼터는 폭력피해자의 일시 보호 위탁으로 위탁에 따른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입차료, 방법시설 보조, 시설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고, 입소 대상자는 부부폭력피해 여성은 물론 모든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 부모와 자녀, 형제, 연인간의 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은 일시보호 이외에도 폭력 피해자가 병원에 진료를 위해 이동하거나 진술 등을 위하여 법원을 방문하고, 지원 요청 등을 위하여 구청 등을 방문할 때 쉼터의 직원이 동행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가 남편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쉼터에 입소한 후 병이 날 경우 모든 치료비를 쉼터에 위탁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일정기간 입소한 후 폭력 피해자가 쉼터에서 자립하고자 할 때 아파트 보증금, 월세 3개월 정도의 자립 자금을 지급하고, 정신적인 피해로 아파트 자립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력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할 경우 공립 혹은 사립 모자자립지원시설로 입소를 연계하거나 혼자(독신)인 경우 돗토리현이 운영하고 있는 스텝 하우스에 입소를 연계하고 있으며, 자립에 따른 입소기간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지원되고 있다. 지역에서 쉼터의 역할은 폭력 피해자가 아파트를 빌려 자립하고자 할 때도 역시 단체 대표자가

연대 보증인이 되고, 월세 미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금전적 보조를 하고, 외국 국적의 여성이 법원, 구청 등을 방문하는데 있어 통역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르는 통역비를 지원하고, 법원과 관계기관에 폭력 피해자가 방문할 경우 피해자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보육비용 역시 부담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립이 어려울 경우 나라의 생활보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무 처리 역시 지원하고 있다(헌법 제25조, 국민의 생존권 규정).

<그림 16> 일본의 여성폭력 지원 체계



출처 : <http://www.gender.go.jp>

폭넓은 지원을 하는 쉼터 제도는 돛토리현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시책으로 비록 지역수준이기는 하나 매우 치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돛토리현에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가출 이후 귀가하는 비율을 2005년 10%, 2006년 6%, 2007년 5%대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 영역에 적극 개입하는 쉼터의 역할과 함께 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 활동은 쉼터의 분위기를 24시간 항상 가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폭력여성을 지지하고 돌보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청, 경찰, 법원, 병원에 가게 될 때 반드시 쉼터 직원이 동행하고 DV(Domestic Violence)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명령의 신청과 진술서의 서류 작성과 이혼재판조정 신청, 또는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자기 파산과 채무정리 등의 신청을 지원한다. 전국여성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여성 학대에 관련한 전문 변호사 소개와 자립을 위한 아파트 찾기, 취업 알선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 지원은 돛토리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연수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입소자가 자립 시 생활용품(전화제품, 생활용품, 침구, 양복 등)을 무료 제공하고, 이사 운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 후 생활공간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로사업을 위하여 기술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고 쉼터에서 강좌가 개설됨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쉼터 직원이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쉼터 퇴소 후의 모자 교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폭력 안에서 자란 자녀들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조 그룹모임을 통해 소품 만들기, 견학여행, 요리교실 등 다양한 교양·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 쉼터 퇴소 후 생활·불안 등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상담체제가 개방되어 있다. 20~30명의 상담원들이 불안 상담에 응대하고 있으며 퇴소 후 5년 정도는 이러한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던 야간상담전화 지원이 2007년 끊어지면서 운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 돗토리현의 쉼터 운영의 사례는 매우 적극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도 최근 민간쉼터로써 예산의 한계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운영의 어려움은 돗토리현의 쉼터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의 재정독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스태프의 부족으로 가정폭력은 24시간 항상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다. 스태프로서의 활동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며, 매우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자원봉사로 쉼터가 스태프를 양성을 해도 스태프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편견 차별,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젠더 바이어스(gender bias)”라고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 부족하며, 국가 전체의 대처가 필요하며, 일본에서의 가정폭력방지법이 2번째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여전히 가해자 대책은 전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민간단체가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활동을 하지만 결국 운영 등 활동영역에서 많은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IV. 성폭력·가정폭력 관계기관 네트워크 실태 조사

성폭력·가정폭력 관계 기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3장 성폭력피해상당소등의 조항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6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폭력 지원시설은 11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통합상담소 2개소, 성폭력 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기관 연계를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으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성·가정폭력방지 실행위원회, 성매매방지실행위원회로 크게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정책협의회 구성 목적은 제주지역의 성·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방지업무와 관련 민·관 기관의 연계기능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성하였다.

협의회의 기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방지기관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주도,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 확보 사업, 여성폭력방지기관 간 연계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관련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위원의 자격은 여성복지분야, 의료분야, 사법분야, 경찰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기관대표이거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실무자를 도지사가 위촉함으로써 위원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정책방지협의회 위원은 현재 겸직 5인을 포함하여 29명(당연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가정폭력분과 위원 16명과 성매매방지 실행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폭력방지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로써의 제시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보다 소극적인 수행을 통해 매년 간담회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폭력관련 기관의 종사자 설문을 통해 향후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실무자(39명)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12.5~12.12일(8일간)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34개(회수율 87.2%)의 설문으로 SPSS ver.12.0과 Excle 2003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29개 문항으로 여성복지기관의 시설 연계 필요성과 관련 12개 문항, 연계 실태에 관련 문항 30개 문항, 연계의 필요성 2개 문항, 연계 활성화 관련 제언 12개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9> 조사개요

조사 개요	내 용
조사 대상	여성복지 시설 종사자
조사 기간	2007. 12. 5~2007. 12. 12(8일간)
분석 방법	SPSS 12.0, EXCEL, 교차분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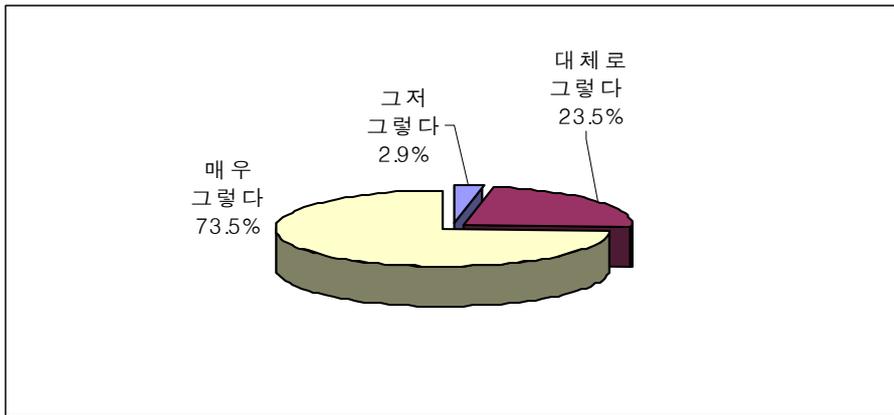
2) 성·가정폭력 연계 체계 실태 조사

(1) 성·가정폭력 연계 필요성과 효과

성·가정폭력 기관·시설의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폭력피해 여성의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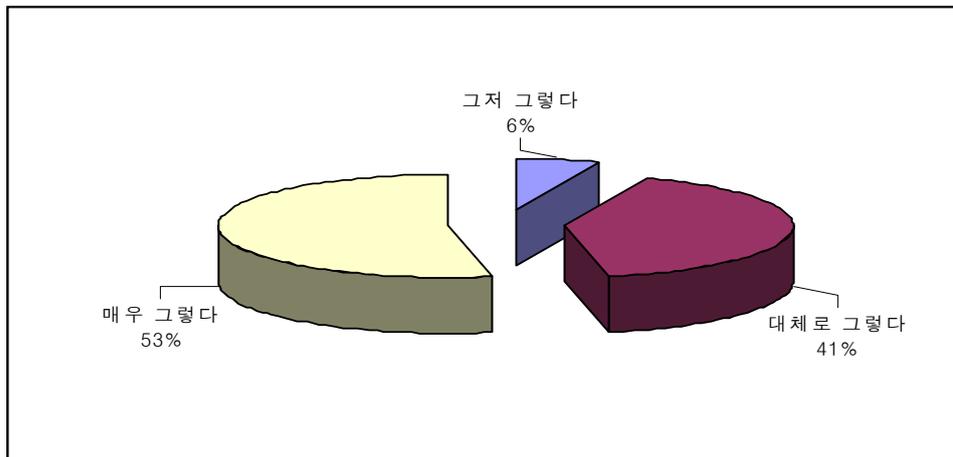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를 한 기관에서 모두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을 살린 전문영역의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복잡한 여성문제의 대처를 위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73.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에 따라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그림 17> 전문영역의 연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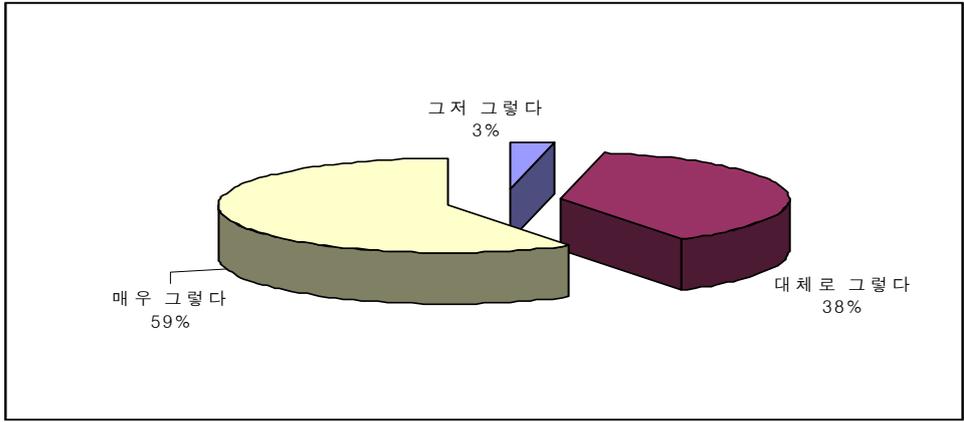
또한 연계가 필요한 이유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9%, 대체로 그렇다 41.2%로 응답함에 따라 피해여성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8>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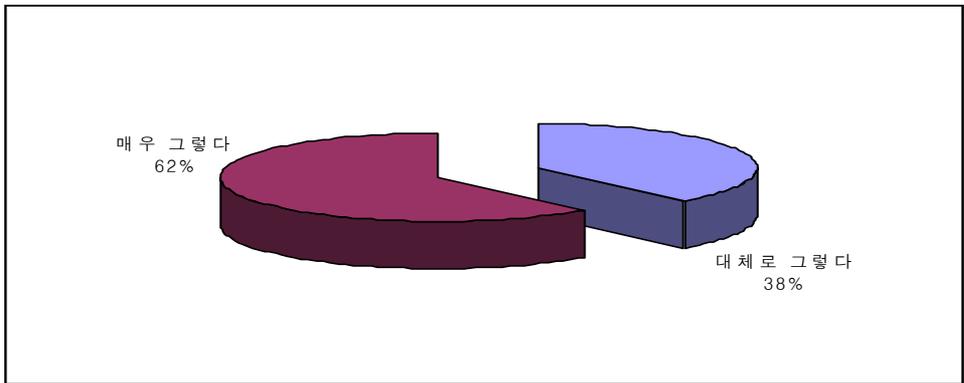
연계의 필요 이유로 폭력피해여성의 문제 해결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8%, 대체로 그렇다 38.2%로 응답함에 따라 폭력피해여성의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19>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 향상력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2%이며, 대체로 그렇다가 38%로 각 기관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계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연계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극복 여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문제해결력 향상, 다양

한 서비스 제공,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 습득 용이,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신속한 서비스 전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 7개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것을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가 31.5%, 그렇다 20.2%, 대체적으로 그렇다 31.9%, 그저 그렇다 10.1%, 전혀 그렇지 않다 6.3%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복지기관의 연계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등 긍정적인 면이 훨씬 강조됨에 따라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위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표 40> 여성복지기관의 연계에 따른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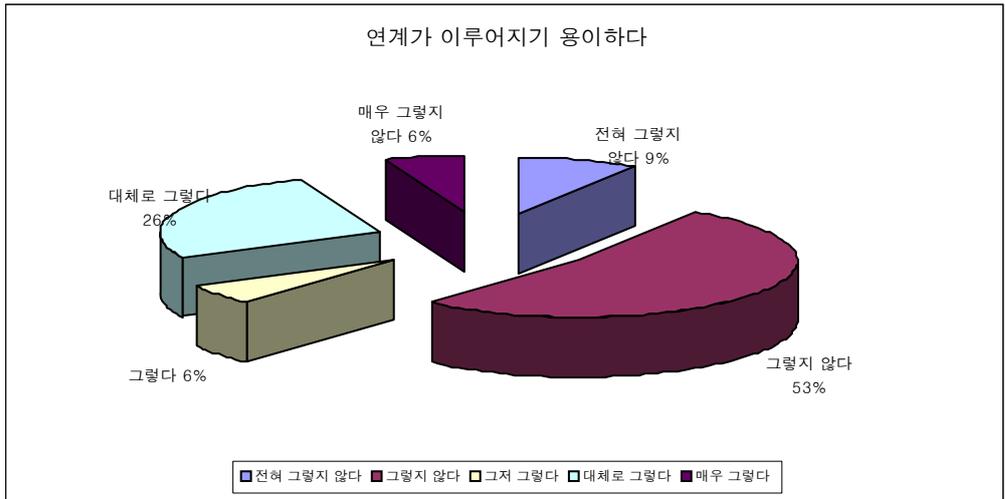
(단위 : 명, %)

	문제 해결력 향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정보 습득용이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신속한 서비스 전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평균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6	17.6	11	32.3	11	32.4	14	41.2	13	38.3	15	44.1	5	14.7	31.5
그렇다	21	61.8	-	-	-	-	-	-	16	47.1	-	-	11	32.4	20.2
대체로 그렇다	4	11.8	15	44.1	18	52.9	16	47.0	3	8.8	13	38.3	7	20.6	31.9
그저 그렇다	2	5.9	4	11.8	5	14.7	1	2.9	1	2.9	3	8.8	8	23.5	10.1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4	11.8	-	-	3	8.9	1	2.9	3	8.8	3	8.8	6.3
합 계	34	100	34	100	34	100	34	100	34	100	34	100	34	100	100

(2)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정도

서비스를 연계함에 있어 각 기관이 연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62%로 현실적으로 연계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현실적으로 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용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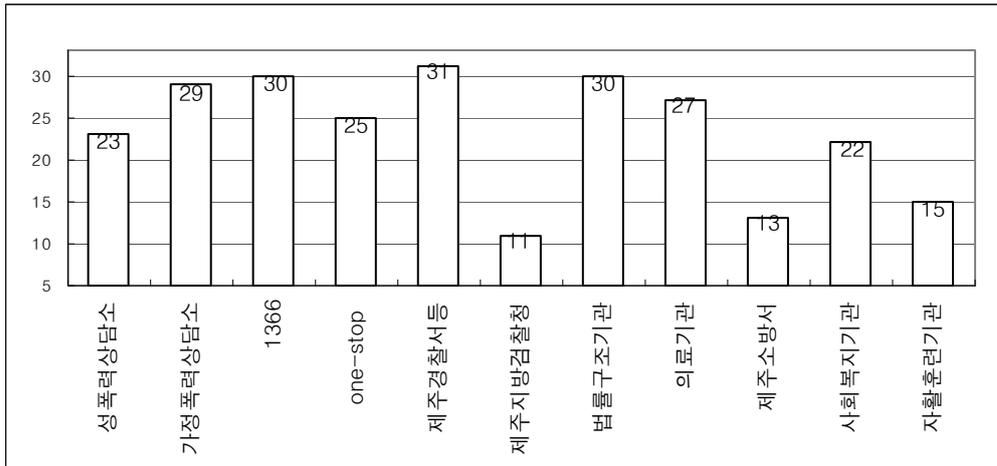
(3) 타 기관과의 연계 기관 수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하여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1366, 여성폭력one-stop센터,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는 평균 79.7%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소방서, 자활기관 등과의 연계는 평균 38.2%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여성폭력관련 기관의 연계에 있어 제주지방검찰청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이 실제 연계를 맺는 기관수에 대한 응답으로 평균 6.6개소와 연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연계를 맺는 기관의 수는 7~9개소 연계가 15개 기관(44.1%)로 가장 많았으며, 10개소 이상 연계 9개 기관(26.5%), 1~3개소 연계 6개 기관 17.6%, 4~6개소 연계 3개 기관(8.8%)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연계기관 수



(4) 연계기관의 실무자 인지 여부

연계기관의 실무자 인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실무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평균 20.1%이며, 알고 있는 경우는 24.9%, 대체로 알고 있는 경우 15.0%, 모르고 있다 10.6%, 전혀 모르고 있다 6.7%, 무응답 22.7%로 나타났다.

<표 41> 연계기관 실무자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 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기관	평균
정확하게 알고 있다	47.2	47.1	55.9	29.4	14.7	2.9	2.9	14.7	-	5.9	-	20.1
알고 있다	17.6	41.2	14.7	35.3	17.7	5.9	32.3	26.5	26.5	32.4	23.6	24.9
대체로 알고 있다	17.6	-	8.8	5.9	23.5	17.6	26.5	14.7	23.5	17.6	8.8	15.0
모르고 있다	2.9	-	8.8	8.8	26.5	11.8	11.8	5.9	14.7	11.8	14.7	10.6
전혀 알지 못한다	-	-	-	2.9	2.9	26.5	5.9	8.8	5.9	5.9	14.7	6.7
무응답	14.7	11.7	11.8	17.7	14.7	35.3	20.6	29.4	29.4	26.4	38.2	22.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각 기관의 실무자들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활동 연대 등을 통해 연계기관의 실무자를 알고 있으며, 또한 종사자 교육이나 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종사자간 교류로 각 실무자에 대한 인지는 응답과 달리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5) 연계기관의 연계 요청 횟수

연계요청은 한 달에 평균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3개월에 1~2회가 2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평균 연계 요청 건수

(단위 : %)

구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기관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	25.0	33.3	25.0	13.6	26.1	11.2	34.6	28.6	14.3	4.8	-	19.0
한 달 1~2회	10.7	37.1	41.7	36.4	17.4		46.2	23.8	14.3	42.9	5.9	27.0
3개월에 1~2회	32.1	3.7	8.3	13.6	26.1	22.2	7.7	33.3	14.3	9.5	35.3	18.0
6개월 1~2회	17.9	18.5	20.8	22.8	21.7	22.2	11.5	14.3	52.3	9.5	23.5	21.0
1년에 1회이하	14.3	7.4	4.2	13.6	8.7	44.4	-	-	4.8	33.3	35.3	15.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6) 기관별 요청 건수

각 기관별로 타 기관에서의 요청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년에 평균 1

회 정도의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연계 기관의 연계에 대한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공식적인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43> 기관별 요청 현황

(단위 : %)

구 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 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기관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	11.5	11.1	36.0	16.0	25.0	-	27.3	15.0	5.3	-	-	13.38
한 달 1~2회	11.5	33.3	24.0	24.0	20.8	5.6	22.7	15.0	5.3	4.8	-	15.18
3개월에 1~2회	46.3	26.0	24.0	16.0	16.7	22.2	-	15.0	31.6	47.6	16.7	23.83
6개월 1~2회	11.5	11.1	12.0	20.0	16.7	16.7	4.5	25.0	31.6	19.0	27.7	17.80
1년에 1회이하	19.2	18.5	4.0	24.0	20.8	55.5	45.5	30.0	26.2	28.6	55.6	29.8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여기서 각 기관의 네트워크 요청에 대한 빈도는 매우 낮게 응답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빈도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연계 요청의 공식적인 횟수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실질적인 연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연계 요청시 타 기관의 실무 담당자의 협조여부

연계 요청에 대하여 타 기관의 실무 담당자의 협조 여부에 대하여 각 기관 별로 타 기관에서의 요청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년에 평균 1회 정도의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연계에 따른 타기관의 실무자의 협조여부

(단위 : %)

구 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 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관련 기관	기타
매우 협조적	35.3	35.3	50.0	29.4	32.4	8.8	38.2	35.3	23.5	14.7	14.7	50.0
협조적	44.1	38.2	17.6	29.4	14.7	17.6	23.6	26.5	17.7	32.4	26.5	5.9
그저 그렇다	5.9	5.9	8.8	14.7	32.4	8.8	8.8	2.9	8.8	11.8	2.9	
비협조적	-	-	-	2.9	-	5.9					-	
매우 비협조적	-	-	-	-	-	-					-	
무응답	14.7	20.6	23.6	23.6	20.6	58.9	29.4	35.3	50.0	41.1	55.9	44.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내부기관 실무자의 연계에 대한 협조 정도

각 기관의 연계 요청에 있어 실무자들은 연계에 따른 협조에 있어 매우 협조적이다 27.7%, 협조적이다 27.5%, 그저 그렇다 10%, 비협조적 0.5%, 무응답 34.3%로 나타났다.

<표 45> 연계에 따른 내부기관의 실무자 협조 정도

(단위 : %)

구 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 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관련 기관	기타
매우 협조적	32.4	35.3	44.1	29.4	23.5	8.8	38.2	26.5	17.6	20.6	11.8	44.1
협조적	47.1	38.2	23.5	26.5	26.5	14.7	29.4	35.3	20.6	26.5	26.5	14.7
그저 그렇다	2.9	5.9	5.9	17.6	26.5	11.8	8.9	8.8	11.8	11.8	8.8	-
비협조적	-	-	-	-	-	5.9	-	-	-	-	-	-
매우 비협조적	-	-	-	-	-	-	-	-	-	-	-	-
무응답	17.6	20.6	26.5	26.5	23.5	58.8	23.5	29.4	50.0	41.1	52.9	4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실무자들은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망의 형성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보면서 드러나는 연계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협조적이다가 전체 응답의 55.2%로 연계에 대한 협조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외부서비스 기관의 연계성과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여부에 있어 대부분의 기관의 연계성과는 63% 정도로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46> 외부 서비스 기관과 연계 정도

(단위 : %)

구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검찰청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제주소방서	사회복지관	자활기관	평균
매우 잘되고 있다	40.0	48.3	48.1	25.0	20.7	5.9	41.7	31.8	17.7	10.5	23.5	28.47
잘되고 있다	40.0	31.0	37.1	35.7	41.4	35.3	20.8	31.8	29.4	47.4	29.4	34.48
그저 그렇다	20.0	17.3	11.1	25.1	31.0	17.6	33.3	22.7	29.4	36.8	35.3	25.42
잘되지 않는 편이다	-	3.4	3.7	7.1	6.9	11.8	-	4.6	17.6	-	-	5.01
전혀 되고 있지 않다	-	-	-	7.1	-	29.4	4.2	9.1	5.9	5.3	11.8	6.6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연계에 있어 가장 성과가 어려운 기관은 검찰청으로 앞서 연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성폭력관련 기관 연계에 있어 검찰과의 연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0) 외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외부 서비스 기관과 연계에 있어 곤란한 이유로 폭력 피해 여성들이 연계기

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평균 55.1%가 응답하였다. 이는 폭력피해 여성들이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상황이 반복적인 노출에서 오는 후유증 등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기관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47> 외부 서비스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

(단위 : %)

구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 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자활 기관	평균
피해당사자의 기관연계거부	50.0	75.0	42.8	80.0	44.5	30.8	66.7	85.7	41.7	22.3	66.6	55.1
관련기관과 공식적 연계절차없음	-	-	28.6	-	11.1	30.8	-	-	25.0	44.4	16.7	14.2
기존업무 과중에 따른 연계업무 추진 곤란	20.0	25.0	28.6	20.0	11.1	-	-	-	8.3	-	-	10.2
관련기관의 서비스 상이함	20.0	-	-	-	-	7.7	-	-	16.7	33.3	16.7	8.6
관계기관 이해 부족	-	-	-	-	11.1	7.7	-	-	-	-	-	1.70
관련기관 기능과 역할 이해 부족	-	-	-	-	-	23.0	-	14.3	8.3	-	-	4.2
연계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10.0	-	-	-	11.1	-	33.3	-	-	-	-	4.9
연계기관에 통제 권한없음	-	-	-	-	11.1	-	-	-	-	-	-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11)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

① 성폭력피해 부문

성폭력피해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선 신변안전보장서비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상담·치유서비스로 응답하였으며 제일 마지막으로 법률지원(소송준비 등 서비스)을 선택하였다.

<표 48> 성폭력 피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유

(단위 : %)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소득지원서비스	3.4	-	13.8
법률지원서비스	6.9	13.8	27.6
직업훈련	-	6.9	10.3
주거제공서비스	-	13.8	-
신변안전보장서비스	38.0	6.9	6.9
정신질환치료 등 관리 서비스	3.4	3.4	-
약물(알코올)치료 서비스	-	-	-
폭력피해여성 전문 의료 재활서비스	10.4	17.3	6.9
피해여성 진단 및 의료보호/보험 적용	13.8	17.2	17.2
전문상담·치유서비스	24.1	20.7	13.8
자녀교육관련	-	-	3.4
계	100	100	99.9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② 가정폭력피해 부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선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신변안전보장서비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상담·치유서비스로 응답하였으나, 제일 마지막 지원은 직업훈련과 피해 여성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료보호/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9> 성폭력 피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유

(단위 : %)

구 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소득지원서비스	6.3	3.1	9.3
법률지원서비스	-	12.5	18.7
직업훈련	-	6.3	21.9
주거제공서비스	3.1	12.5	6.3
신변안전보장서비스	43.7	3.1	6.3
정신질환치료 등 관리 서비스	3.1	-	3.0
약물(알코올)치료 서비스	-	-	-
폭력피해여성 전문 의료 재활서비스	6.3	15.6	6.3
피해여성 진단 및 의료보호/보험 적용	-	15.6	21.9
전문상담·치유서비스	37.5	31.3	6.3
자녀교육관련	-	-	-
계	100	100	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12) 외부 서비스 기관에서 인지하는 정도

외부 서비스 기관에서 인지하는 정도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인지 정도는 평균 값을 살펴보면 업무 내용을 알고 있다가 44.37%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ne-stop센터와 경찰서/경찰청, 지방 검찰청, 법률구조기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위하여 많은 부분 홍보를 하고 있는 one-stop센터와 공공기관인 경찰서/경찰청, 검찰청, 법률구조 기관 등은 다양한 연계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 과정 등이 매뉴얼화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50> 외부 서비스 기관의 인지 정도

(단위 : %)

외부기관의 인지 정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지활 기관	평균
기관명을 아는 정도	-	-	2.9	14.7	26.5	26.5	8.8	32.4	26.5	8.8	2.9	13.64
업무내용 안다	52.9	50.0	44.1	52.9	58.8	32.4	61.8	38.2	20.5	44.1	32.4	44.37
업무 내용 자세히 안다	29.4	35.3	38.3	17.7	5.9	-	5.9	2.9	11.8	8.8	26.5	16.59
업무내용 자세히 모름	17.7	-	-	-	-	-	-	-	-	-	-	1.61
전혀 모름	-	-	-	2.9	2.9	2.9	2.9	-	-	3.0	-	1.33
무응답	-	14.7	14.7	11.8	5.9	38.2	20.6	26.5	41.2	35.3	38.2	22.4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13) 연계에 따른 실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바탕으로 실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연계 이후 서비스 관련 문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타 기관 실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단위 : %)

구 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one-stop 센터	경찰청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률구조 기관	의료 기관	제주 소방서	사회 복지 기관	지활 기관	평균
모든 경우 문의	17.7	14.7	14.7	17.6	17.6	14.7	17.6	14.7	17.6	14.7	29.4	17.4
대체로 그런편	29.4	23.5	23.6	14.7	11.8	2.9	20.6	8.8	-	5.9	14.7	14.2
대체로 하지 않음	26.5	26.5	20.6	26.5	20.6	20.6	17.7	20.6	20.6	23.5	11.8	21.4
전혀하지않음	2.9	2.9	2.9	8.8	5.9	5.9	8.8	8.8	8.8	8.8	-	5.8
무응답	23.5	32.4	38.2	32.4	44.1	55.9	35.3	47.1	53.0	47.1	44.1	4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결국 연계의 비율 역시 낮은 실정에서 연계 이후 후속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역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제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2> 타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제언

(단위 : %)

구 분	제 언
성폭력 상담소	양적·질적 서비스 확대, 전문영역 독자적 개발 및 확대
가정폭력상담소	양적·질적 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시 우선 입소 절차와 진단필요, 전문적인 상담 연계, 각 상담소별 직접 연계
1366	인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각 기관 연계시 신속한 연계
one-stop 센터	의료·법률·수사지원 확대, 상담 연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의료지원 연계
경찰청/경찰서	비밀보장업무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신속한 대응, 지역사회 고착된 사고 개선, 상담후 서비스 연계, 가정폭력교육
지방검찰청	관련 기관 의견 수용, 상담과 서비스 연계시 지원
법률구조기관	내실 있는 지원 확대, 상담 연계에 따른 지원 필요
의료기관	피해자 법적 의료 조치 필요, 지정 병원 확대, 진단시 의료보험확대, 상담과 서비스 지원 연계, 치료의 범위 확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제고,
소방서	상담 후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기관	상담 후 서비스 지원,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필요
자활관련 기관	상담 후 서비스 지원
기타	다양한 기관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학교 등 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각 기관이 향후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상담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과 심리적 지원 등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양적·질적 서비스의 개선 역시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지속적인 폭력 교육을 통해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 성·가정폭력 관계기관 간담회

성·가정폭력 관계기관의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연계 강화와 현행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실태 등의 의견을 청취,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논의 1. 쉼터 입소 절차 및 지원

- 시설협의회와 피해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담소와 1366을 통해 시설 연계 가능
→ 쉼터를 보호는 물론 쉼터 입소가 적절한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경찰청과 직접적인 쉼터 연계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쉼터 입소에 따른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학습 교재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

논의 2. 쉼터는 노출/은폐 과정에서 연계기관의 담당자 인식이 중요

-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가 노출되어 쉼터의 다른 입소자까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논의 3. 경찰과의 연계 부분

- 경찰은 예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 고소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문제로 가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중용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음.

논의 4. 공공기관의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연계 불편 및 담당자의 성 감수성 부족

- 공공기관(경찰, 동사무소 등)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연계 등 업무를 다
시 설명하는 등 번거로움 발생
- 담당자의 성 감수성 여부에 따라 연계나 지원 등의 편차가 큼.
예) a) 교육청 : 초등학교는 비교적 전학이 용이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학이 어려우며, 피해자 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음.
b) 동사무소 : 모자가정 신청에 있어 증빙할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긴박한 상황으로 신분증을 갖출 수 없어 신
분증 발급 과정 등으로 다시 가정폭력으로 악순환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논의 5. 포괄적인 성·가정폭력예방 교육의 전담 기관 필요

- 현행법은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원 및 전문인력 부
족으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교육청의 가정폭력 교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함.
- 예방교육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
육 매뉴얼 제작 필요
-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을 통해 기초학습 공유 필요

논의 6. 가해자에 대한 제재 노력 필요

- 가해자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경찰이나 교육기관 등이 대처하지 못
하고 피해자가 입소한 쉼터를 공개하는 등 다시 2차 폭력이 발생함에 따
라 가해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의 준비가 필요함.

논의 7. 종사자의 지속적인 재교육 필요

- 종사자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워크숍 등의 운영이 필요함.

논의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확대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구상권을 피해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 과중

논의 9. 시설 지원의 현실성

- 종사자 지원 및 시설 지원에 있어 현실 반영한 지원 필요

VII. 정책 제언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부문

지금까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각 기관의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고찰해보았다.

예방프로그램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개별 프로그램 역시 충분히 개발되어 실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폭력관련 예방프로그램을 모색한다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53> 폭력예방프로그램의 단계별 고려 내용

단 계	성 폭 력	가 정 폭 력	
1차적 예방프로그램	목적	성폭력 사전 예방	가정폭력 사전 예방
	대상	일반시민과 성폭력 관계자	일반시민과 가정폭력 관계자
	내용	성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방법	홍보 및 교육	홍보 및 교육
2차적 예방프로그램	목적	성폭력 조기 차단 및 저하	가정폭력 조기 차단
	대상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 파악·피해위험집단.자해위험집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 파악
	내용	생애주기 고려한 예방프로그램	학교와 직장을 연계한 가정폭력 방지 예방프로그램
	방법	홍보 및 교육	홍보 및 교육
3차적 예방프로그램	목적	재발방지 프로그램	재발방지 프로그램
	대상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개입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직 접개입
	내용	성폭력 후유증, 극복방안, 사회적 응 문제 등	갈등중재, 가정폭력 심각성, 경제 적 자립지원 등
	방법	심리치료 및 교육	심리치료 및 교육

1) 연령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령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등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나 각 대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보육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등 대상에 따른 교육의 실시와 현행 1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3~4회기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성폭력·가정폭력의 사전 예방교실인 인권 교실 운영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일회성의 교육을 통해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폭력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부부간의 원만한 갈등 중재를 통해 가정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앞서 제언을 바탕으로 일회적인 교육에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개념이 정착되기 어렵다. 따라서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앞서 사전 폭력예방 교실로써 인권교실의 운영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기관의 교육 통합 운영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성·가정폭력 관계 기관 및 통합 기관에서 다양한 예방교육 들이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전문 교육을 특화 지역별·권역별 할당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4) 행위자·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추진

현재 가해자·행위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정기관의 의뢰를 통한 교정교육 과정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성·가정 폭력의 재범비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성폭력사건과 사체 유인 등 성폭력사건의 흉포화로 지역에서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성폭력 당사자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의식개선은 물론 가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공개는 물론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5) 공교육 기관에 있어 지속적인 성·가정폭력 교육의 정규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과 성매매·성희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1년에 1~2차례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사각지대인 실정이다.

가정에서 배우자 학대는 물론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실시와 함께 자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대상별 폭력상황 대처 훈련, 폭력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갈등이 폭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대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6) 지역 사례를 통한 성·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지역 중심의 성·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개발된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의 섬 제주」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2.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부문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기관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쉼터와 상담소와의 유관체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one-stop지원체제 등과는 비교적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정책협의회²⁶⁾는 2개의 실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가정폭력방지 실행위원회와 성매매 방지 실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가정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복지분야, 의료분야, 교육분야, 사법분야, 경찰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의 기관대표나 위임받은 실무자를 위촉, 실행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의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하기보다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 가지 관계기관의 네트워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의 연계 매뉴얼 개발

현재 유관기관은 각각 기관의 특성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담중심과 긴급구조, 쉼터, 성폭력·가정폭력·통합·법률 자문 중심 등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한 각 기관의 매년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집중과 선택의 효과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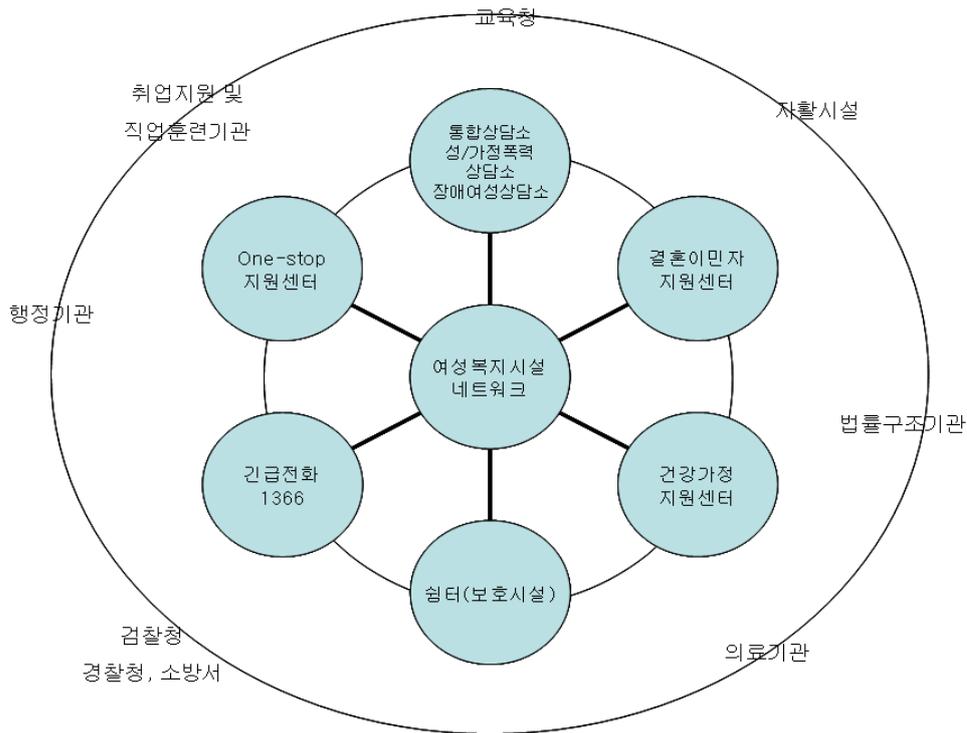
이러한 사업별 기관의 통합방식을 통해 여성폭력과 관련 포괄적인 지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6) 본 논의에서는 성매매실행위원회는 다루지 않고 성·가정폭력방지 실행위원회만을 다루고자 한다.

2) 다단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현재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사건의 발생과 신고에 있어 관계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1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추후 연계기관으로 구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림 23> 연계 네트워크



3) 연계기관 네트워크와 관련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 개최

연계기관 네트워크와 관련 매달 혹은 분기별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재 각 기관의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관련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에 따른 협력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여성폭력 관련 업무는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러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활동으로 종사자간 지속적인 간담회 운영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종사자 중심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장이 필요하다. 실무자들 간의 상시적인 모임과 함께 도청과 시청의 관련 공무원과의 간담회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공유를 통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우 장기적인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상담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체크 리스트와 연계관련 점검 지표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계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각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연계 업무를 꺼리는 것은 매우 상반된 견해로써 오히려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근거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고찰과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 폭력 관계 기관의 연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계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질적이고 양적인 서비스의 증가가 모색되어야 하며, 기관은 물론 행정당국의 지원과 함께 여성 관련 폭력에 대한 의식의 변할 수 있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부록 1

성·가정폭력 연계 체계와 예방교육에 관한 설문지

제주발전연구원은 1996년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제주도청과 협약을 통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다양한 여성의 정책의제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 구축 방안은 최근 여성폭력이 심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방안은 사후·소극적 논의에 그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문제가 감소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며, 그 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복지기관·시설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효과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피해여성들의 문제는 복잡적이므로 여러 전문영역들의 연계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는 폭력피해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한 기관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폭력피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폭력피해 여성에게 외부서비스기관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니 문제해결 정도가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폭력피해여성에게 연계를 통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연계를 통해 폭력피해여성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서비스 등을 보다 쉽게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폭력피해 여성에게 연계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연계를 통해 폭력피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폭력피해여성에게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연계를 통해 폭력피해여성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 귀 상담소와 연계를 맺는 기관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기관 모두 표시)

- ① 성폭력상담소 ② 가정폭력상담소 ③ 1366 ④ 여성폭력 one-stop 센터
 ⑤ 제주경찰청 등 경찰서 ⑥ 제주지방검찰청 ⑦ 법률구조기관 ⑧ 의료기관
 ⑨ 제주소방서 ⑩ 사회복지기관 ⑪ 자활관련 기관 ⑫ 기타()

※ 연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 있으면 기타란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연계 기관											
① 성폭력상담소	② 가정폭력상담소	③ 1366	④ 여성폭력 one-stop 센터	⑤ 제주경찰청 등 경찰서	⑥ 제주지방검찰청	⑦ 법률구조기관	⑧ 의료기관	⑨ 사회복지기관	⑩ 청소년관련기관	⑪ 자활관련 기관	⑫ 기타()

2. 귀 상담소와 연계를 맺는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의 수를 적어 주십시오. 만약 없다면 0이라고 써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연계기관의 수												

3. 연계기관의 실무자를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매우 정확하게 안다.												
대체로 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4. 연계를 맺고 있는 외부서비스기관 중에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수를 적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관의 수												

5. 외부서비스기관들과 관련해서 귀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연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1년에 1회 이하												

6. 귀 상담소는 외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연계를 요청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1년에 1회 이하												

7. 외부 서비스 기관에서 귀상담소에 연계를 요청할 때, 그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얼마나 협조적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매우 협조적이다.												
협조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비협조적인 편이다.												
매우 비협조적이다.												

8. 귀 상담소에서 외부서비스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때, 외부 서비스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얼마나 협조적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매우 협조적이다.												
협조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비협조적인 편이다.												
매우 비협조적이다.												

9. 외부서비스기관은 귀상담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기관명을 아는 정도일 것이다.												
업무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1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문항	연계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외부서비스기관과 연계할 때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가 교환된다.													
폭력피해여성을 연계할 때 실무담당자간에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연계하고 있는 외부서비스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조 증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의 모임이 있다.													
연계하고 있는 외부 서비스기관 기관장간의 업무협조 증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의 모임이 있다.													
연계하고 있는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목록이 있다.													
연계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연계기관을 확보, 관리하는 업무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할당)되어 있다.													
연계기관을 발굴하는 일은 실무담당자가 한다.													
귀 상담소에서 발굴, 확보하고 있는 연계자원(연계기관, 전문인력)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 교류하고 있다.													
외부서비스기관관이 귀 상담소로 폭력피해여성을 연계할 경우 서비스 초기부터 실무담당자들이 협의한다.													
귀 상담소에서 외부서비스기관으로 폭력피해여성을 연계할 경우, 서비스 제공 초기부터 실무담당자들이 협의한다.													

11. 귀 상담소의 폭력피해 여성을 외부서비스 기관에 연계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근황 등을 그 기관의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합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문항	연계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한다.													
대체로 하는 편이다.													
대체로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12. 폭력피해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또는 √표를 해주세요.

문항	연계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매우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되지 않고 있다.													

16. 각 기관과 연계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계 기관	제 언
상당소	
쉼터	
1366	
여성폭력 one-stop 센터	
제주경찰청 등 경찰서	
제주지방검찰청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제주소방서	
사회복지기관	
자활관련 기관	
기타()	

17. 제주도청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의 기능강화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완이 마련되면 좋을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김승권 외. 2002. 「성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여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엘림. 2000.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 황정임. 1999.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가정폭력 예방 전략 개발 보고서」. 보건복지부
- 조흥식 외. 2004. 「여성복지학」. 학지사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6. 「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성폭력 따로 또 같이」. 가정폭력추방 연속 토론회 제4차 토론회 자료집.
- 인터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63008>
- 일본 배우자폭력에 따른 피해자 지원 <http://www.gender.go.jp/kanrenlink/index.html>
- http://www.afp.gov.au/_data/assets/pdf_file/20631/AFP_FVIP_Final_Report_03-04_2_June_06.pdf
- http://www.aic.gov.au/stats/crime/domestic_violence.html
- http://www.silentwitness.net/sub/latest_research.htm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공동연구	김 효 선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064-758-1500)

ISBN 978-89-6010-046 6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